

제433회 국회
(임시회)

국방위원회회의록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3월23일(월)

장 소 국방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8)
2.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88)
3.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2)
4.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85)
5.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4805)
6.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82)
7.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83)
8.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85)
9.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91)
10.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95)
11.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4)
12.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9)
13.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41)
14.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43)
15.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1881)
1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33)
17.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35)
1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72)
1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87)
20.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0)
21.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57)
2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4)
23.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5)
24.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67)
25.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88)

26.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16)
27.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40)
28.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65)
29.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15)
30.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21)
31.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91)
32.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21)
33.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17)
34.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5)
3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1)
3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09)
3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41)
3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44)
3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54)
40. 한국청소년사관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41)
41. 한국유격군 지원에 관한 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70)
42.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37)
43.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13)
44. 군사훈련영향지역 주민 보호 및 사고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39)
45.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84)
4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44)
4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79)
4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95)
49.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96)
5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1)
5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49)
5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79)
5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73)
5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26)

5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47)
5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93)
5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02)
5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6)
5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81)
60.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43)
61.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12)
6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15)
63.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5)
64.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59)
65.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0)
66.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7)

상정된 안건

1.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8) 5
2.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88) 5
3.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2) 6
4.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85) 6
5.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4805) 6
6.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82) 6
7.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83) 6
8.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85) 6
9.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91) 6
10.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95)
..... 6
11.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4) 6
12.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9) ... 6
13.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41) 6
14.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43)
..... 6
15.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1881) 6
1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33) 6
17.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35) 6
1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72) 6
1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87)	6
20.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0)	6
21.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57)	6
2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4)	6
23.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5)	6
24.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67)	6
25.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88)	6
26.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16)	6
27.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40)	6
28.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65)	6
29.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15)	6
30.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21)	6
31.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91)	6
32.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21)	6
33.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17)	6
34.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5)	6
3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1)	6
3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09)	6
3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41)	7
3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44)	7
3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54)	7
40. 한국청소년사관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41)	7
41. 한국유격군 지원에 관한 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70)	7
42.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37)	7
43.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13)	7
44. 군사훈련영향지역 주민 보호 및 사고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39)	7
45.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84)	7

4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44)	7
4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79)	7
4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95)	7
49.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96)	7
5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1)	7
5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49)	7
5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79)	7
5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73)	7
5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26)	7
5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47)	7
5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93)	7
5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02)	7
5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6)	7
5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81)	7
60.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43)	7
61.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12)	7
6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15)	7
63.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5)	7
64.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59)	7
65.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0)	7
66.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7)	8

(10시01분 개의)

○소위원장 부승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에 계류된 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법률안의 심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8)

2.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88)

3.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2)
4.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85)
5.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4805)
6.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82)
7.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83)
8.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85)
9.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91)
10.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95)
11.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4)
12.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9)
13.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41)
14.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43)
15.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1881)
1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33)
17.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35)
1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72)
1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87)
20.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0)
21.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57)
2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4)
23.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5)
24.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67)
25.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88)
26.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16)
27.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40)
28.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65)
29.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15)
30.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21)
31.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91)
32.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21)
33.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17)
34.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5)
3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1)
3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09)

3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41)
3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44)
3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54)
40. 한국청소년사관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41)
41. 한국유격군 지원에 관한 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70)
42.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37)
43.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13)
44. 군사훈련영향지역 주민 보호 및 사고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39)
45.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84)
4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44)
4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79)
4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95)
49.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96)
5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1)
5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49)
5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79)
5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73)
5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26)
5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47)
5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93)
5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02)
5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6)
5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81)
60.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43)
61.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12)
6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15)
63.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5)
64.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59)
65.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0)

66.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7)
(10시02분)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6항까지 6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심사 경과와 검토의견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토론을 마치고 나서 해당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서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참석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건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차례대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효율적 심사를 위해서 간단한 내용으로 제명이 같은 경우나 취지와 내용이 비슷한 경우의 법안들은 한꺼번에 묶어서 설명드리고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위 자료 1권, 1항과 2항 군인복지기본법은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1쪽입니다. 김병주 의원이 발의하신 군인복지기본법입니다.

2쪽 보시겠습니다.

김병주 의원 대표발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가 독신자숙소를 제공받지 못한 영외 거주 군 간부를 대상으로 전세·월세 임대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독신자숙소의 명칭을 간부숙소로 용어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24년 11월 소위에서 심사한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 논의가 민간주택임대 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군인복지기금의 주거지원계정 재원 마련 방안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즉 예산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명칭 변경은 적절해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3쪽 보시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군 독신자숙소를 제공받지 못한 군 초급간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간부숙소로의 명칭 변경은 실제 기혼별거 간부도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에서도 간부숙소라고 칭하고 있어서 법령 전체의 명칭 통일성 측면에서도 적절해 보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의견입니다.

이 법안이 제출된 지 오래돼 가지고 부칙 시행일을 이미 도과한 2025년 1월 1일로 규정하고 있어서 법안을 의결하는 경우에 부칙을 공포 후 6개월 정도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임종득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군인복지기본법입니다.

자료 8쪽입니다.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 군인복지기본법안 주요 내용으로 군인복지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는데요, 이 내용을 국회에 제출하고 공표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기본계획의 작성 및 시행에 대한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군인복지 정책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여 정책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다른 입법례를 보시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서 기본계획 수립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을 보시면요, 다른 두 가지 입법례에서는 국회 제출과 공표를 하면서도 단서로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다만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입법례에 따르도록 했으면 한다는 수정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방부령의 공표 절차와 관련해서 위임하도록 하고 있는데 별도로 위임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먼저 법안 1번, 수정의견 포함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두 번째 법안도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공표 절차와 관련해서 국방부령에 별도로 위임하여 규정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셨는데 그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령으로 규정해야 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해당 규정은 삭제하는 방향으로 수정 동의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한기호 위원님.

○한기호 위원 독신자숙소를 간부숙소로 바꾸면 영어는 그대로 써요? 지금 영어로는 뭐라고 그래요? BOQ라고 그러잖아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Bachelor Officer Quarters.

○한기호 위원 간부숙소라고 했을 때도 그냥 쓴다, BOQ라고?

○국방부차관 이두희 영어 명칭은 적절하게 한번 고려는 해 보겠지만 우리 군 내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명칭을 찾아보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이게 실제로 한미연합훈련하고 할 때 숙소에 대한 배정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용어에 대해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영어로 쓰는 것은……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우리는 어차피 연합작전을 계속해야 되니까 간부숙소라고 해도 영어는 그대로 BOQ라고 쓴다. 이렇게 미국이 쓰는 것과 동일한 용어를 쓰는 것으로 할 때 그게 이해가 쉽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위원님 주신 고견 잘 참고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왜냐하면 오늘 회의상에서 이걸 이야기를 해 놓는 것이 앞으로도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군들이 쓰는 용어는 아니니까 독신자숙소를 간부숙소라고 쓰게 되면, 바꿀 수 있거든요. 바꾸면 혼란이 오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선원 위원님.

○박선원 위원 아니요, 의견 없습니다. 이대로 통과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부안하고 전문위원안 해 가지고 통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오늘 한기호 위원님께서 훌륭한 지적 해 주셨는데 사실은 필요해 보여요. 용어 통일이라든지 영어 표현 같은 경우 그냥 단순하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지만 또 그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고려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유념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면 방금 심사한 안건을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건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해 정리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3건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차례대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자료 11쪽 이하 3건의 군인연금법이 있습니다.

먼저 자료 1권 12쪽입니다.

첫 번째 군인연금법은 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군인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에 대한 연금급여권을 대상으로 압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13쪽 보시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상 이혼 등 사유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급여받을 권리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급여수급권자에 대해 압류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현행법상 그렇습니다.

개정안은 양육비 채권에 대한 채무이행의 의도적 회피를 방지하고 자녀 양육의 물적 기초를 이루는 양육비 채권을 충분히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와 유사한 입법례로 같은 취지로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 연금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2025년 7월에 본회의에서 의결·공포된 바 있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 공무원연금법에서와 똑같은 문구로 민사집행법 제246조 1항 4호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하여 압류를 허용한다는 문구를 맞춘다는 내용인데요. 이것의 내용은 결국 연금의 2분의 1은 놔두고 2분의 1을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를 허용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군인연금법입니다.

자료 16쪽 한기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군인연금법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요, 기존에 장교였던 사람이 부사관 또는 준사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등 이른바 하향 병적 전환의 경우에도 복무기간을 합산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사 또는 순직 후에 특별진급된 경우에 그 특별진급된 계급에 상응하도록 퇴직수당을 지급하자는 내용입니다.

자료 17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장교가 하향 병적 전환하는 경우 그리고 장교가 복무 중에 다른 군간부후보생에 지원하는 경우 복무기간에 상호 합산·포함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당초 현행법에는 상향 병적 전환에 대해서는 인용되어 있는데 하향 병적 전환에 대해서는 법령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이 형평에 맞춰서 맞추자는 내용입니다.

중간 동그라미 보시면요, 개정안은 상향 또는 하향 병적 전환에 따른 군인연금법상의 복무기간 합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입법적 미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입니다. 19쪽입니다.

전사 또는 순직을 통해서 특별진급된 경우에 특별진급된 계급에 상응하는 퇴직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19쪽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상 특별진급된 군인의 퇴직수당은 특별진급 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입법례를 보시면요, 군인재해보상법의 경우에 특별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도록 2025년 1월에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다른 입법례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군인연금법입니다.

정부제출안입니다. 자료 24쪽입니다.

정부제출 군인연금법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요, 별정우체국 퇴직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별정우체국 퇴직연금 수급자가 군인연금 퇴역유족연금을 동시에 수령하는 경우에 퇴역유족연금의 절반을 감액해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자료 25쪽 보시겠습니다.

검토의견 중간에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다른 입법례로 공무원연금법이나 사립학교교

직원 연금법 등에서 별정우체국 퇴직연금 수급자가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 유족연금을 절반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입법례가 돼 있어서 군인연금법도 거기에 맞춰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세 번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포함해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4번과 5번 법률안은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한기호 위원님.

○한기호 위원 이걸 물어보려고.

군인의 아내가 학교 선생님인데 군인이 연금을 받다가 사망했을 경우에 그러면 학교 선생님인 부인이 60%를 받게 돼 있는데 그걸 받을 받고 있나요, 지금 현재?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배우자가 공무원이거나…… 군인, 공무원, 교사는 남편이 먼저 사별했을 경우에 남편이 받는 연금액의 반만 받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거꾸로 부인이 군인이야, 그다음에 남편이 공무원인데 남편이 돌아가신 경우도 똑같이 공무원연금을 받던 것의 반을 받습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그 세 가지 직종은……

○한기호 위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남녀 구분 없이.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연동이 되는데 별정우체국만 안 되게 돼 있어서 정합성 차원에서 다 맞추자는 취지의 법률안입니다.

○한기호 위원 지금 그러한 예가 실제로 있나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우체국은 없습니다. 별정직은 없는데 상황의 경우를 봐서 법률안을 이렇게 맞춰 놓는 겁니다.

○한기호 위원 국방부가 선제적으로 안 주는 걸 먼저 법을 만드나요?

○소위원장 부승찬 유용원 위원님.

○유용원 위원 장교에서 부사관 또는 준사관으로 임용되는 숫자가 늘어난다고 제가 들었는데 작년, 제작년 같은 경우는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제가 지금 그 숫자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증가되고 있는 추세는 맞습니다.

○유용원 위원 뒤에 실무자 중에 누구 아시는 분 없나요?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확인해서 좀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한기호 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난번에 헬기 사고 나서 두 분이 돌아가셨는데, 두 분이 준위인데 한 분은 본래 중위 때 준위 지원을 해 가지고 가신 분이네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맞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니까 군대 생활을 계속 장교로 할 수 있는데 장교로 안 가고 준사

관을 지원해서 되신 분이네요. 이런 케이스가 대표적으로 장교에서 준사관이 됐기 때문에 하향으로 조정된 거지요. 그러면 지금은 그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위가 장교가 되면 받는데, 부사관이 장교가 되면 받는데, 장교가 부사관이나 준사관이 되면 못 받으니까 똑같이 해 주자 이겁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면 하향해서 다시 군에 들어오면, 계급 하향해서 들어오면 아예 상호 합산이 안 돼요? 그건 아닐 거 아니예요? 하고는 있는데 법조문이 없는 거 아니예요, 조항이?

○**국방부차관 이두희** 이분들이 아직 연금이나…… 과거에 오래된 분들은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최근 한 오륙년 전부터 장교들은 장기가 어려워지고 부사관들에 대한 직업 안정성이 높아지다 보니 대위로 전역해서 부사관으로 다시 지원해서 중사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심사한 안건을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3건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자료 28쪽입니다.

군인 재해보상법은 한 건입니다. 유용원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요,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전상 및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판정에 대한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29쪽 검토의견 보시겠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경우 다른 장애와 달리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검사로 밝히기가 어려워므로 발현 및 진단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 복무 중에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하여 퇴직 후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겪고 있는 군인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래쪽 당구장 표시 수정의견을 보시겠습니다.

보상의 대상으로 현재 개정안에 의하면 ‘PTSD 장애 등’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등’으로 하면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PTSD 장애 이외의 정신장애에 대하여는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공무상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곤란하다는 실무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자의 PTSD 장애—‘등’을 빼고요—에 한정하여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의 수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개정 방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장애보상금 지급하는 방식으로 33조 5항 하나를 신설하는데 현행법이 병사에 대한 장애보상금과 간부에 대한 장애보상금 지급 규정의 항이 달리 되어 있습니다. 각각 항에 맞춰서 각각 개정 사항을 규정하는 방식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칙 시행일인데요. 하위법령 규정 정비 등을 위해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실무상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수석전문위원님 수정의견을 포함하여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박선원 위원님.

○박선원 위원 차관님이나 정부 측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아닌데요 대상포진하고 뇌수막염에 걸려서 나왔는데 그 후유증으로 계속 안면마비되고 얼굴이 틀어지고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그러니까 복무 중일 때 워낙 안 좋아 가지고 의가사제대를 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그냥 계속 있다가 국군수도병원에도 있고 병원을 전전하다가 나중에 정상적으로 제대는 했는데요. 그러나 안면이 마비돼 가지고, 간헐적으로 몇 년에 한번씩 대상포진이 오고 또 얼굴이 마비돼 가지고 돌아가고 이런 경우는 군대에서 일어난 일인데 전상은 아니지요, 전상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경우는 이 법률에는 적용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 법률안은 예를 들면 천안함 폭침 때 생존한 장병들이 PTSD를 겪는데 기존 법률은 6개월 안에 이것을 하도록 돼 있는데 군생활 하는 동안에는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조치도 못 하고 6개월이 지나 버리고 신청을 하니깐 6개월이 경과했다는 이유 때문에 안 되는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제하고자 하는 법률로 저희는 인식하고 있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선원 위원 제가 말씀드린 사례 같은 경우는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다 해당이 안 되나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이 법률안은 적용 대상이 아니고 그 부분은 기존 군의 의료제도 안에서, 보훈이나 의료제도 안에서 검토가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박선원 위원 그건 어느 분한테 물어봐야 돼요?

○국방부보건복지관 성기욱 보건복지관입니다.

○박선원 위원 그럼 나중에 따로 한번 물어볼게요.

○국방부보건복지관 성기욱 예.

○박선원 위원 보훈복지관이요?

○국방부보건복지관 성기욱 보건복지관입니다.

○박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문제없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심사한 안건을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5항까지 9건의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자료 1권 40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9건의 법안을 동시에 하게 될 텐데 내용은 세 가지 유형이고요. 각 법은 세 가지 학교법이 있는 것입니다.

40쪽 표의 제일 아래쪽 주요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요 사관학교 등을 졸업하고 장교로 임관한 이후에 의무복무기간 미이행자의 경우 학비 등을 상환하자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거는 졸업하기 전이 아니라 사관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재학 중에 중도퇴교자에 대해서 양성비용을 상환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관학교 입학하는 기준입니다. 입학연령 상한을 2년 정도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41쪽 이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졸업하고 장교 임관 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복무기간을 미이행한 자에 대한 학비 등의 상환 규정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겠습니다.

개정안은 사관학교 교육을 통해 양성된 우수한 장교들이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성실한 군복무를 이행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찰대학 설치법 등 다른 법령에도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통계는 최근 3년간 평균 연 20명 정도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입법례로 경찰대학 설치법에 의하면 경찰대학 졸업 후에 6년간 의무복무를 못 하는 경우 학비 상환 규정이 있는 사례입니다.

참고로 외국 사례로 미국 사관학교에서도 사관생도는 2학년 2학기 종료 후 교육과정 진행 서약서를 작성하고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아니한 자, 재학 중 퇴교자 모두에게 교육비 환수제도를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 5년차 전역 승인을 받은, 장교의 경우는 10년 의무복무인데 5년 단위로 전역 승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장기복무자의 경우에 개정안에 따른 학비 등 상

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수정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자료 44쪽 두 번째입니다.

사관학교 재학 중 중도퇴교자에 대해서 양성비용을 상환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겠습니다.

개정안은 개인적인 사유로 중도 퇴교한 자에 대해서 국고 손실을 방지하고 우수한 장교 자원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사관학교 중도퇴교자의 통계는 2020년 117명에서 2024년 180명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 입법 사례로 대학교 재학 중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되어 지원금을 지급받던 사람이 선발이 취소되는 경우에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환수하는 규정이 있는 유사한 입법례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 세 번째 내용은 자료 47쪽입니다.

사관학교 입학연령 상한을 2년 정도 상향하는 규정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겠습니다.

사관학교 입학연령의 상한을 상향 조정하여 보다 많은 사람에게 사관학교 입학 기회를 부여하여 우수한 병역자원 확보에 기여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입학연령 상한을 조정하는 것은 경찰대학 설치법 등의 다른 입법례와 비교해서 형평성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첫 번째 안건은 5년 차 전역 승인받은 장기복무자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수석전문위원님 수정의견을 반영해서 동의합니다.

두 번째·세 번째 안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대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박선원 위원님.

○박선원 위원 그 취지는 이해가 충분히 되는데요. 지금 중도퇴교자가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입법 고시되면 그 전에 더 많이 퇴교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퇴교를 좀 줄이자라고 하는 뜻이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 소요된 예산 낭비도 줄이자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이나 법안의 목표가 분명해야지요. 그러니까 퇴교를 줄이자라고 하는 것인지, 예산을 아끼자고 하는 것인데 오히려 아예 입학 시험도 확 줄어버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중도퇴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예 지원자도 줄어버리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우리가 정책 하다 보면 늘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라는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뜻으로 이 법을 통과시켜서 퇴교도 안 하고 예산도 줄이고 이러고 싶은데 그러나 의외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어서……

중도퇴교하면 돈도 다 물어내야 되고 하니까 그냥 아예 지원도 안 하겠다 해서 오히려 확 줄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 부분도 풍선 효과로 일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요즘 젊은 층의 문화가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때나 부승찬 위원님 때나 저희 때는 사관학교에서 퇴교되면 거의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젊은 친구들이 사관학교를 이직을 하는 디딤돌로 쓰고 있고 또 본인의 수학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서 퇴교당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고 자퇴이기 때문에…… 편입 수단으로 사관학교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는 요즘 세대들의 문화를 바로잡아야 될 필요성이 아주 크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박선원 위원 사관학교 2학년까지 마치고 다른 대학교로 편입할 때 학점이나 이게 그대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대로 인정됩니다, 자퇴는. 가령 예를 들면 저희 때는 편입을 하려고 자퇴하는 사람은 아예 없었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렇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성적이 미달되거나 몸이 아파서 불가피하게 나갔는데 지금은 육사 같은 경우에 2학년 2학기 성적 사정이 끝나면 서울에 있는 우수한 대학에 편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도움닫기 발판으로 쓰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박선원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백선희 위원님 먼저 손들었습니다.

백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백선희 위원 법안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46페이지의 중도퇴교자 현황을 보면 특히 육사하고 해사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2배 가까이 증가하거나 특히 해사 같은 경우에는 21년·22년도 1학년을 보면 6배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이 부분으로만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차관님께서도 여러 요인이 있다라고 하는 비슷한 말씀을 하셨으나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유념해서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한기호 위원님.

○한기호 위원 우리가 입법의 취지에 충분히 동의할 수 있고 입법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경우라도 입법의 타이밍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법은 사관학교가 잘나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모집 인원이 팍팍 늘어나고 또 군에서도 대우가 좋다고 생각해서 직업으로도 군인을 선택하는 환경이 되고 이럴 때는 이런 법을 만들어도 여기에 대한 부작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마 우리 건군 이후에 가장 나쁜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이 입법에 대해서 박선원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이거 할 때냐’, 이 얘기에 굉장히 중요한 시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보고 싶은 거는 그러면 실제로 육해공군·3사관학교 생도들을 대상으로 한번 설문을 해본 적이 있는가. 그래서 확실한 데이터라도 좀 가지고 있는가. 이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임관한 초급장교들—소위·중위 정도—곧 OBC 교육을 전부 들어가잖아요. 별

써 들어가 있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한기호 위원 그러면 OBC 장교들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초급장교 그다음에 현재 생도들 이렇게 조사를 해 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이것을 좀 보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게 우리 소위원회 통과를 하고 나면 틀림없이 오늘 통과되면 이것은 오늘 언론에 나올 수 있어요. 여기 많은 법이 있지만 언론을 탈 수 있는 법은 이 법이 탑니다. 그러면 이게 파장이 또 커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한번 데이터를 뽑았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파면 같은 경우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내가 군대생활을 하고 싶으나 내 뜻이 아닐 경우, 그러면 뜻이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자기 자의적인 게 아닌 경우도 똑같이 취급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경우를 이제 봐야 돼요.

지금 실제로 이번 12·3 계엄과 관련해서도 자기가 군대생활 하고 싶다고 하고, 하고 싶지 않다고 안 하고…… 나는 범법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범법이 돼서 파면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소송을, 항고를 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수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는데 강제에 의해 전역을 당했을 경우, 그런 경우 징계위에서 전역을 당했을 때도 똑같이 취급해야 되는가, 자의가 아닌데. 이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좀 더 정밀하게 봐야 되겠다.

저는 본 취지는 동의합니다. 첫 번째, 타이밍이 지금이 맞느냐? 두 번째는 사관학교 생도들이나 초급장교들한테 설문이든 어떠한 형태로든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 그다음에 자의냐 아니냐 하는 부분을 한번 따져 봐야 된다, 자의냐 아니냐. 이걸 따지지 않고 그냥 했을 경우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 취지는 동의하지만 이걸 다시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이 준비가 되면, 이게 어차피 금년도 전반기에 통과하나 후반기에 통과하나 적용하는 건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후반기쯤에 가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고 그런 데이터를 국방부가 가져오고 하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선희 위원 질문 하나만 더 드려도 될까요?

○소위원장 부승찬 백선희 위원님.

○백선희 위원 지금 다 무료잖아요. 그래서 학비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이거를 반환해야 되는 경우에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학비, 급여, 모든 비용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라고 되어 있는데요. 학교 다닐 때는 무료로 다녔어요. 그런데 청구를 할 때는 일인당 전액 또는 일부라고 하는데 전액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얼마씩 상환을 해야 되는 거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 부분은 아직 액수까지 산정이 안 됐고 법률안이 통과가 되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텐데, 교육비도 간접비가 있고 직접비가 있고 여러 가지 구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교직원 급여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이런 간접비까지 포함하게 되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폭을 넓혀서 직접비 수준으로 염두에 두고 그렇게 했는데 추후에 보완을 구체화해야 될 내용입니다.

○**백선희 위원** 생각보다 조금 복잡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면밀하게 살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무료로 교육을 받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 국가장학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국가장학금제도를 보면 저소득층은 사실상, 물론 그 이외의 생활비를 지원받는 거는 아니지만 교육비 같은 경우에 거의 무료로 일반 사립 학교도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저도 한 가지 여쭙볼게요.

여기 보면 한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자발적이나 아니냐는 여기에 근거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강제적인 퇴교나 혹은 전역 조치에 대해서는 이걸 안 물리는 거잖아요, 여기에 보면. 그렇지요? 신설하는 8조 2항에.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소위원장 부승찬** 저는 궁금한 게 경찰대 같은 경우도 이 법을 적용하는 거잖아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경찰대도 이 법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면 경찰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경찰대 같은 경우 이 법 시행되고 나서 지원자가 좀 줄었나요? 그런 것들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단순 비교는 안 되겠지만.

○**국방부차관 이두희** 제가 세부적인 조사는 못 했는데, 경찰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유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공무원이 있는데 행정고시 출신자 중에 경찰대를 나와서 고시에 합격해서 공무원이나 검사나 법조계로 가면 학비를 그대로 반납하고 경찰공무원을 안 하고 그런 것처럼 당초부터 굉장히 유연하게 제도가 돼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또 한 가지는요 부칙에 보면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를 1년 정도 두는 건 어때요? 아까 한기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래도 뭔가 기준이라든지 규칙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법 외적으로. 하위 규칙을 만들려면 6개월로 되겠어요? 그래서 1년 후에 시행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한기호 위원님 말씀하신 거나 박선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의 보완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번 계엄을 통해서 사관학교에 입학하는 이런 사람들은 다 반영됐을 걸로 봐요. 지원자가 줄고 이런 건 반영됐을 걸로 보고 정상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늘어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자발적으로 자퇴를 하거나, 예를 들어서 강제가 아닌 경우에는 환수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져요. 이건 상당히 늦었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도 민간대학 위탁을 가면 실질적으로 학위를 못 받으면 그 돈을 반납하잖아요, 학비를. 아닌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인사상 불이익이 있고 현부심위 대상이 되고 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는데……

○**소위원장 부승찬** 학비도 반환 조치를 하잖아요. 그건 아닌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학비 반환 여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안 해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저희 때까지는 안 했는데 최근에 법률이……

○소위원장 부승찬 지금은 어떻습니까?

○국방부인사기획관 이인구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알겠습니다.

유용원 위원님.

○유용원 위원 저도 기본적인 취지는 공감하고요. 아까 차관님 말씀하셨지만 과거에는 법대, 의대 이쪽만 편입을 노리고 사관학교 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른 분야까지 많이 확산된 걸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부분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한기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조금 노파심일 수 있는데 우려되는 것 중의 하나는 지금 사관학교 교육제도 개혁이 추진되지 않습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유용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특히 육사 같은 경우 지금은 서울에 있는데 지방에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까지 되면 아마 더 큰, 신입생 특히 우수 자원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타격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것 자체를 보류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시간을 갖고 파악한 다음에 추진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사관학교 교육개혁이 상반기 중에는 발표될 예정이지 않나요? 그렇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그렇습니다.

○유용원 위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면 의견들이 지금 여기서 통과시키지 말자는 의견이신 겁니까?

○한기호 위원 후반기에 다시 한번 하면……

○소위원장 부승찬 심사한 안건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5항까지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및 제17항, 2건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인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자료 49쪽입니다.

49쪽부터 16·17항 군인사법·군무원인사법은 같은 취지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있는 55쪽 18항 군인사법은 다른 내용이라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50쪽입니다.

군무원인사법·군인사법, 김태선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해당하는 이유로 징계처분 등을 하는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징계처분 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그 2개의 법에 똑같은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료 51쪽입니다.

일단 개정안 주요 내용 먼저 보시면, 현행법에는 성폭력범죄라든지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그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경우에는 해당 통보 규정이 없는 현황입니다.

개정안은 그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5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군인사법과 군무원인사법의 조문 개정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징계권자 또한 징계처분 등에 대한 결과가 피해자에게 통보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어서 징계 절차에 있어서 보다 객관적이고 신중한 판단을 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밑에 동그라미 보시면, 다만 징계 대상자의 징계처분 결과라는 개인정보가 피해자에게 제공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라는 법익과 피해자의 징계처분 결과에 대한 알권리 보장 필요성, 법익 간의 비교형량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유사한 입법례로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이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피해자가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군무원인사법, 군인사법 같은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56쪽입니다.

강선영 의원 대표발의하신 군인사법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요, 군인의 비행(非行)사실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종료 통보를 받은 경우 군인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이 징계처분 절차 진행을 위해서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해당 조사·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보시겠습니다.

57쪽입니다.

2022년 군사법원법의 개정으로 일부 범죄의 수사 및 재판 관할이 민간으로 이관되면서 군인의 비위 사건에 대한 수사 주체가 군 내부기관이 아닌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징계권자가 징계 양정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민간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자료에 대한 접근을 요청할 필요성이 생긴 상황입니다. 2024년도에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이러한 내용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군인에 대해서도 수사·조사 자료에 준거한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시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16항·17항·18항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3건 모두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한기호 위원님.

○한기호 위원 오늘 자꾸 얘기해 가지고 위원장님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소위원장 부승찬 천만에요.

○한기호 위원 저는 이 안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차관님이 아니고 바뀌셨기 때문에…… 성 문제와 관련해서 군형법을 다시 한번 고쳐야 됩니다. 이걸 정부 발의를 해 달라고 하는데 안 하시는데.

우리 군형법에 성범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어떤 취지로 위원님 말씀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형법에 성범죄에 대해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징역형으로 딱 돼 있습니다. 벌금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징역형이에요. 이게 언제 만들었냐 하면 군에서 과거에 남자들 간의 성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만든 법이라서 그렇습니다. 여군들이 없을 때 만든 법이에요. 그러니까 군 내의 성 문제는 남자들 간의 성 문제를 가지고 징역형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간부들은 여군들이 10%가 넘었습니다.

남녀 간의 성 문제가 아주 미세한 부분으로 나누면 여러 형태가 있지요. 그런데 징역형 이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징역형이 되면 나중에 연금을 반밖에 못 받지 않습니까, 자기가 기여금 낸 것밖에. 그러다 보면 실제로 20년 이상 경과한 간부들에 대해서, 어차피 상하 간에 하급자가 성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상급자가 일으키지. 그런데 상급자가 나중에 징역형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주변이, 지휘관이나 여기서 자꾸 숨기는 형태가 발견돼요.

그러면 사회는 어떠냐? 사회는 성범죄에 대해서 벌금형부터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군은 벌금형이 없어요. 그러면 경미한 경우—지금 그런 사례가 여러 건 있습니다만—여군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여군에게 손금 봐 준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징역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 가지고 징역형을 하면 되겠어’ 해서 이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고를 받은 지휘관이나 이쪽에서 숨기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오히려 일이 확산되는 겁니다. 더 커져 가지고 나중에는 관련된 사람들까지 전부 처벌되고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양형은 적절한 수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법안 발의를 벌써 두 번이나 했는데 법사위에서 통과가 안 돼요, 이게 국방위원회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국방부가 이 법안에 대해서 군인들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안 갖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 군대에서는 이걸 숨겨 가지고 생긴 일들이 여러 건 있지 않습니까? 공군 같은 경우에 법무실장까지 다 문제가 되고 여러 사람이 문제가 됐는데 이것 왜 이렇게 됐습니까? 숨기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왜 숨겼냐? 실제로 나중에 파면되고 징역형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국방부가 이 부분을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방금 심사한 안건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및 18항, 2건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

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소위자료 1권 60쪽입니다.

강선영 의원 대표발의 국군포로 송환법입니다.

주요 내용 보시면, 국군포로 기본정책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국군포로의 생사확인 및 가족과의 교류에 관한 사항, 두 번째는 국군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의 신변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61쪽 검토의견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국군포로 기본정책에 포로 생사확인 및 가족과의 교류를 포함하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고요. 포로 및 가족에 대한 신변보호 대책 추가는 포로 및 포로가족에 대한 신변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참고로 첫 번째 내용인 국군포로의 생사확인 및 가족과의 교류의 경우 현행법상으로 통일부 소관의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규정된 남북 이산가족이라는 틀에 포함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박스 밑에 신변보호의 경우에는 국군포로송환법 및 국군포로 송환 등에 관한 업무운영규정—총리령입니다—이것에 따라서 시행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방금 심사한 안건을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국군포로의 송환 및……

○박선원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개정안의 신변보호 대책이 뭐예요? 나는 확인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신변보호는, 국군포로가 우리 지역에 와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탈북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탈북해서 어떤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신변의 위협을, 위해를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 그에 따라서 신변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선원 위원 관련 다른 법이 있잖아요.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탈북자 이야기는 아니지요? 탈북자는 별도로 관리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그런데 이분들은 국군포로였다가 북에서 귀환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태로 보면 탈북이……

○박선원 위원 고령의, 한국전에서 싸우시다가 북에 잡히신 분들 이야기하시는 것 아니

에요? 그런 거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그러니까 북에 계시던 분인데, 국군포로가 6·25 때 북에 포로가 돼서 계시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탈북을 했을 경우에 신변 위협을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이 있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했다는 말씀입니다.

○**박선원 위원**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의 신변보호 대책, 이게 정확하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하고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러거든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 ‘신변보호 대책 추가는 국군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그것 말씀입니까?

○**박선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이 어디 있는 사람을 보호하겠다는 건지……

○**국방부차관 이두희** 보호는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을 우리 정부에서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군포로와 억류지라고 하면 억류지는 북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군포로께서 탈북을 하실 때 같이 데리고 나온 북한 출신 가족이 용어대로 하면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이 되는 겁니다.

○**박선원 위원** 그러면 지금 넘어오셔 가지고 여기 살고 있는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이 몇 분이신데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지금 생존해 계시는 포로는 여섯 분이고, 총 팔십 분이 오셨는데 포로가족은 115세대인데 그중에서 남한에 와서 가정을 꾸린 게 아니라,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현황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갖고 있지 않은데……

○**박선원 위원** 그러니까 방법이나 유형은 다를지 몰라도 어쨌든 탈북해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들어오신 분들이잖아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렇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러면 탈북자 일반에 대한 신변보호는 등급이 다 따로 있거든요. 등급이 있는 거고 그 외에는 국정원에서 6개월, 하나원에서 6개월 하고 방출하는 것, 우리 사회에 방출하는 거고.

그다음에 신변보호를 한다는 게 마치 그분들에 대해서 무슨 급박한 위해나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포로가족이 와 가지고 북이나 누구에 의해서 테러를 당하거나 사망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냐고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현재 사례가 그렇게 발생된 것은 없는데……

○**박선원 위원** 없잖아요. 그런데 이 법을 왜 만들어요?

왜냐하면 탈북자 일반에 대해서 국가정보원하고 통일부에서 관리하는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신변보호 같은 경우는 매우 제한적으로 하거든요. 신변보호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경찰서를 지정해야 되고, 해당 경찰서가 지정되면 집 앞에서부터 보호하는지, 아니면 전화 연락이 오면 보호할 수 있는 연락체계를 갖는 건지, 아니면 하루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순찰하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신변보호 대책 해 가지고 이걸 법으로 만들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기존의 탈북자 관리 법이 있는데 그것하고 이걸 왜 이중으로 하냐고요, 실제로 가족들에 대해서 위해 사례도 없는데.

예를 들면 북한의 고위 탈북자들 있잖아요, 고위 장성이라든지 외교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하나원에서 방출하고 나서 6개월 정도 보고 안 해요. 그리고 하면 또 본인들이 싫다 그러고. 그래서 보호를 안 하고 있거든요. 다만 본인이 어떤 낌새를 느꼈을 때, 위협을 직접 받거나 했을 때에 한해서 보호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일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신변보호 대책 하면 무슨 일이 있어서 신변보호 대책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미 신변보호하는 방법이 다 있는데.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박선원 위원 이걸 왜 만들어야 돼요? 왜 만들어야 되냐고요.

일반적으로 탈북자들에 대해서, 고위 군 출신 탈북자도 있고 외교관 출신조차도 우리가 법에 딱 해서 신변보호 대책 이렇게 안 하고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지요? 더욱이 그분들이 어떤 피해를 받고 있지 않은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슨 엄청난 보안 정보·기밀사항을 들고 오는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정부 입장에서는 이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검토를 할 때 국군포로와 억류지 출신 가족에 대해 국군포로분들의 예우나 보호라는 관점에서 동의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제가 한말씀드릴게요.

제3조에 해당되는 건데, 이게 신변보호를 위해서 뭘 하라라는 게 아니고 국가의 책무를 정의하는 거거든요. 책무를 정의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박선원 위원님께 설명을 제대로 안 드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는 이런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의무조항이잖아요? 그렇지요, 3조. 그렇지 않아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신변보호의 대책을 강구해서 뭘 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이 아니잖아요. 국가는 최소한 국군포로에 대해서 이러이러 해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의미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신변보호 조항이 들어간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 보호와 관련된 것은 영으로 하는 거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총리령도 있기는 한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게 선언적 의미로 국군포로에 대한 예우라든지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인데 박선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법률안으로 만들어지면 구속력을 가지고 행위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우려를 하시는 부분을 제가 동시에 같이 이해를 했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모든 탈북자가 신변보호 대책을 법에 다 넣어 달라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용공 특이점이 없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소양이라든지 우리 헌법, 애국가부터 시작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러면서 계속 관찰한 다음에 사회에 방출하거든요. 사회에 방출한 다음에 예를 들면 정보기관이 됐든지 이런 데서 다시 이상한 접촉이라든지 있을 때 우리가 들여다보는 경우조차도 굉장히 꺼려하고 마치 자신을 감시한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국군포로 및……

국군포로는 정확하게 다릅니다. 국군포로분들하고 일반 탈북자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지금 몇 분 남아 계시지도 않고. 그런데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의 신변보호 대책 이렇게

되면 나머지 법을 짚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부처에서 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통일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이런 법들 있잖아요. 다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미 우리 정부나 정보기관이나 통일부에서 판단했을 때 중요 탈북자, 고위 탈북자 중에서 일정 기간 신변보호도 하고 또 유사 시에 연락망도 갖춰 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국방부차관 이두희 위원님, 제가 이 법안을 이해할 때는 현재도 국군포로분들의 신변 보호 업무는 그대로 적용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있다고 해서 하이 레벨로 밀착 마크를 한다는 그런 개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변의 특성에 따라서, 일반 탈북자처럼 위협의 정도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가족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정도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일괄적으로 등급을 강화해서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동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박선원 위원 65페이지 보면 국군포로의 송환 대책 있잖아요. 거기에서 국군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의 송환 시 신변 대책은 돼요. 송환 시 신변보호 대책은 가능하다고요. 2호 국군포로의 송환 대책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포로가족의 송환 시’라고 하는 것을 추가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면 이것은 일반 탈북자하고 겹치고 일반 탈북자 전체에 대해서 적용해야 되는 선례의 입법이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부처에게 다시 물어봐야 돼요. 통일부, 외교부, 국정원한테 이렇게 해도 되냐고 타 부처 의견을 물어보셔야 된다고요. 이해는 하시잖아요, 차관님?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그렇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러니까 제3조(국군포로의 송환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로 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박선원 위원 그러면 국군포로, 연세 드신 분이 가족까지 함께 대동해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돌아오신다는데 당연히 안전은 우리가 보장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른 관련 부처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 관련 부처의 법하고도 연관이 있을 수 있으니 ‘포로가족의 송환 시 신변보호 대책’으로 하는 게 맞다 이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착한 이후까지 쭉 연장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소위원장 부승찬 유용원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유용원 위원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 상당히 일리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법의 취지가, 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반 탈북자와 북한에서 탈북한 국군포로는 다르지 않습니까. 탈북 국군포로는 6·25 전쟁 때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본의와 다르게 북한에 억류됐다가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국가의 책무, 도리 차원에서 더 예우를 해 드리는 게 기본적으로 맞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그동안 탈북 국군포로나 그 가족들이 우리 정부에 신변보호라든지 이런 것을 요청했던 사례는 없었습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유용원 위원 아무튼 소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국가의 책무, 도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세부 규정은 박 위원님께서 정리를 좀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런 것

들을 감안해서 검토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박선원 위원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일부 타당한 주장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귀환포로는 탈북민이 아니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우리 국민이 북에 억류돼 있다가 돌아오신 겁니다.

○임종득 위원 우리 국민이지요. 그러니까 귀환포로는 분명히 실질적으로 신변보호 대책이 강구돼야 되는 것은 분명하잖아. 그렇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현재도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가족까지 확대되는 부분, 박선원 위원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억류지 출신의 포로가족까지 확대하는 부분은 기존에 탈북민에 대한 그런 신변보호 대책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임종득 위원 그런데 제가 들여다보니까 총리령으로, 업무운영규정에 경찰청 업무 중의 하나가 귀환포로에 대한 신변보호 업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임종득 위원 그것을, 귀환포로에 대한 부분을 법률로 쪽 끌어올려 가지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이 포함된 것이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임종득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법령들을 쪽 보면 어느 법에 있으니까 이쪽에는 필요 없다 이렇게 할 필요성은…… 겹치는 경우가 대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변보호라는 게 별도의, 탈북민하고 다른 대단한 신변보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다릅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이 가고 박선원 위원 말씀하시는 데도 공감이 가는데, 신변보호라고 해 놓으면 너무 포괄적인, 보호해 준다는 것이 오히려 어떤 침해가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우려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박선원 위원님 대안으로 ‘송환 시’라는 것을 넣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하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런데 두 위원님 다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임종득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탈북민에 대한 신변보호의 부분이 탈북민들이 불편하니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한다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안 하지 않잖아요.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똑같은 논리지요. 그렇지 않아요?

귀환포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가족 같은 경우도 사실은 탈북민과 똑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불편함이 있더라도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신변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탈북민에 대해서 있으니까 여기서는 필요 없다라고 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한기호 위원님.

○한기호 위원 간단한 건데 길어지네.

우선 탈북한 국군포로 가족이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하니까 가정 숫자로 115가족이 있습니다. 물론 더 많지요, 대표자만 115명이니까. 여기서 대표로 활동하시는 분이 어느 여사 분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만나 뵙는 분인데, 이분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탈북민들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추가적인 게 필요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문이 있는 것이 똑같이 한다는 개념인지 아니면 별도로인지 이 얘기가 돼야 되는데, 여기 있는 것을 가지고 별도로 볼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지. 지금 총리령으로 탈북민들 해 주는 것하고 똑같이 하는데 불만이 없다, 더 해 달라고 원하지 않는다, 이게 본인들 얘기에요. 그러면 법에 이렇게 넣는 것이 별도로 하자는 거냐 아니냐 하는 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박 위원님도 별도로 할 필요는 없다는 것 아니에요?

○박선원 위원 제가 보기에 국군포로를 송환해야 될 일이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신 귀국보다는 그 가족분들도 당연히 같이 돌아오시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돌아오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송환 과정에서 일어나는 우리 정부의 임무 그렇게 한정하면 문제가 없다 이거지요. 그렇잖아요. 연세 드신 국군포로 85세 이상 넘으셨는데, 저희 선친도 지금 생존해 계시면 95세인데……

○한기호 위원 지금 여덟 분인가밖에 안 계세요.

○박선원 위원 그러니까요 그분이 북에 있는 가족까지 같이 돌아오시면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일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국군포로, 돌아오시는 분에 대한 신변보호 안전 대책은 필요하다. 송환 시에 필요하고 그분 돌아오시면 그분의 업적이나 기릴 것 있으면 선양 사업도 해야지요. 국군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의 신변보호 대책이라고 돼 있는 점이 3조 2항(국군포로의 송환 대책)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더 필요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송환할 때의 대책이니까.

○소위원장 부승찬 정리해 주십시오.

○박선원 위원 그렇지만 분명히 하기 위해서 국군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의 송환 시 신변보호든 신변안전이든 하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한기호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임종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종득 위원 지금 박선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송환 시로 한정을 하게 되면 개정 취지하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기존 법률안을 할 때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시행령에다가 신변보호를 어떻게 한다는 부분을 더 담으려고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원래 취지는 국가의 책무를 다한다는 부분, 예우와 책무를 다한다는 부분인데 ‘송환 시’라고 넣어서 ‘송환’에 더 방점이 되면 송환할 때 대사관이나 정부의 역할이 더 강화된다는 측면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이 법의 취지가 거기에 있다고 이해를 하셨습니까, 차관님?

○국방부차관 이두희 아니요. 그것은 아닌데 그렇게 넣어도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임종득 위원 이 법의 취지는 송환 시를 포함한 전체 과정에서의 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맞습니다.

○**임종득 위원** 거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송환 시로 하는 순간 이 법의 취지는 완전히 바뀌는 거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송환 시를 안 넣었을 때에도 기존 탈북자에 대한 신변보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임종득 위원** 거기에 귀환포로는 없잖아요. 귀환포로는 한국민이라면서.

○**국방부차관 이두희** 아니요, 귀환포로에 대해서는 명시가 돼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어떻게 명시가 돼 있어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귀환포로, 말 그대로 총리령에……

○**임종득 위원** 지금 탈북민에 대해서 기존에 규정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여기에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니깐, 그것은 아니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 부분은 귀환포로분께서 북에서 가정을 꾸려서 북에서 데리고 나오는 그 가족을 말씀드리는데 겹칩니다.

○**임종득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이 법에는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귀환포로와 그 가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억류지 출신 가족.

○**임종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적시를 해야 될 부분은 귀환포로에 대한 신변보호 대책은 추가적으로 강구가 돼야 된다는 논리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송환 시’라고 딱 들어가는 순간 송환 끝나고 나면 귀환포로의 신변보호는 강구 안 할 겁니까?

○**박선원 위원** 그것은 일반 탈북자 관리에서 다 해요.

○**한기호 위원** 탈북민들 하는 거 똑같이 해 주고 있다니까.

○**박선원 위원** 예, 다 하는 거예요.

○**임종득 위원** 우리 국민인데요? 탈북민이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잖아요.

○**박선원 위원** 그래도 일정 기간 보호를 합니다.

○**임종득 위원** 그 신분이 어떻게 되냐고. 탈북민이에요? 아까 내가 그래서 물어봤던 거잖아요.

○**한기호 위원** 탈북민으로 해야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국군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이렇게 돼 있으니 국군포로는 탈북민이 아닌데 탈북민의 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 말씀으로……

○**임종득 위원** 그것을 제가 아까 물어봤던 것 아니에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런데 별도로 국군포로의 신변보호 업무나 이런 것들이 총리령으로 아주 구체화돼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총리령이 아니고 그것을 끌어올려 가지고 법으로 규정을 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소위원장 부승찬** 임종득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이게 정말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위법령에는 있어요. 그런데 상위법령에 당위규정으로서는 없어. 그래서 넣는 건지, 아니면 하위법령에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상위법령에다 넣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각 부처에서 국군포로에 대한 신변보호 대책이 있어요. 그렇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소위원장 부승찬 시행하고 있어. 그런데 상위법령인 국군포로와 관련된 법에는 그 당위규정이 없어. 그래서 당위규정으로 넣는 건지, 아니면 하위법령에 미비하니까 올려서 의무조항으로 넣어서 하겠다라는 건지, 이것을 정리 안 하다 보니까 대책부터 내놔라, 아니면…… 이런 게 되잖아요.

제가 이 법률을 이해하기로는 통일부, 외교부, 국정원, 경찰청 할 것 없이 국군포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신변보호 대책을 강구해서 수립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위 법인 상위법에는 당위규정으로서, 당위조문으로서 이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조문을 넣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논쟁은 뭐냐면 이 밑의 법령이 국군포로에 대해서는 너무 소원하네, 대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네, 그래서 상위법에 올려서 대책을 세워서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수립해서 시행해야겠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논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거냐. 밑에서 다 시행하고 있는데 위의 법령에 국가의 책무에 이게 안 들어가 있으니 이것은 넣을 필요가 있다, 당위규정이기 때문에 넣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 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국방부가 동의하는 건지, 아니면 신변보호 대책이 미흡하다 그래서 상위법으로 올려서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하겠다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논쟁도 2개가 충돌하고 있어요. 단순한 건데, 아주 단순한 건데 지금 충돌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방부의 입장이 됩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국방부의 입장은 현 시스템상 국군포로에 대한 보호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발의된 취지를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현재 시행하고 있지만 이것을 선언적 의미로 국가의 책무를 좀 더 강조하는, 예우를 더 높이고 강조하는 측면에서 이 법안이 발의됐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면 국방부에서 그렇게 이해하면, 밑에서 정상적으로 다 처리되고 있어. 신변보호를 다 각 부처에서 영에 따라서 하고 있어. 그런데 신변보호와 관련된 게 정작 국군포로법에는 없어요. 그래서 당위규정으로 넣는 거지요? 이것을 명확히 해줘야 아까 박선원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국가의 책무로 여기에 넣어서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할 건지, 그러면 주도적으로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하위법령이랑 이게 안 되니까 송환 시 신변보호 대책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말고, 지금 계속 도돌이 논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통과시키지 말고 일단 이게 당위규정인지 아니면…… 강제 조문인지를 갖고 오셔야 뭔가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님들도 헷갈리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 직권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박선원 위원 잠깐만요. 10초만요.

위원장님, 이 법 3조 있잖아요, 3조 1항·2항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니까요 이것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박선원 위원 국군포로의 송환 대책을 국가가 세워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사실 이것은 동어반복이에요.

○소위원장 부승찬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및 제21항, 2건의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2개의 군수품관리법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자료 68쪽입니다.

표를 보시면 2개의 안건이 있습니다. 추미애 의원 대표발의 군수품관리법과 백선희 의원 대표발의 군수품관리법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추미애 의원안은 지난번 25년 소위에서 한번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기본 내용은 군용차량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사용연한, 운행거리 등을 고려한 불용 결정을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군용차량의 안전띠 설치 등 탑승자의 안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제출된 백선희 의원안의 경우 군용차량의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비슷한 취지고요. 그 이외에 군수품의 정의를 예시를 통해서 구체화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료 69쪽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용차량의 안전조치 방안 마련 근거에 관한 내용입니다.

박스의 좌측 하단을 보시면, 개정안 발의 배경은 2024년 12월에 공군 전투비행단 내에서 군용트럭이 가로수를 들이받아 탑승자 등이 튕겨져 나와 사망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계기로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군용차량 탑승인원의 안전 강화 그리고 군에 대한 신뢰감 제고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군 표준차량의 범위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함으로써 군 표준차량의 체계적·안정적 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다만 2개의 개정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는 군용차량 중심으로만 돼 있는데요 군용차량을 포함한 군수품 전체를 포괄하는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 신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법 체계상 이것은 일반적인 군용차량의 운용·처분 조항이 아니라 안전에 관한 별도의 절을 신설하는 식으로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꼭지입니다. 75쪽입니다.

백선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내용 중의 하나인데요, 군수품의 정의를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군수품을 국방부 등이 관리하는 물품으로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 의하면 물품을 화력, 탄약, 군용차량, 통신·전자장비 등등의 물품으로 예시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법률상 군수품의 개념을 명확히 해서 예측 가능하게 하고 군수품

의 범위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발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현행법은 3조에서 군수품을 전비품과 통상품으로만 구분돼 있고 군수품의 종류를 시행령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첫 번째 내용은, 개정안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 내용들이 법으로 반영할 사항인가 국방부 내부의 훈령이나 행정규칙으로 반영할 부분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좌석안전띠나 안전조치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이미 훈령으로 반영한 바가 있고 군용차량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군수품에 대한 안전조치를 고려해야 된다는 수석전문위원 말씀도 있는데 단일 사안으로 법에 반영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안전조치를 마련해서 내부 규정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법률 안에 물품에 대해서 예시를 나열하는 부분 관련해서도 입법 취지에는 동의하는 측면이 있지만 물품관리법이나 타 법에서도 법령에 구체적 물품을 일일이 다 열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령이나 국방부령에서 세부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법률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백선희 위원님.

○백선희 위원 먼저 군수품관리법의 개정 발의 배경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19전투비행단, 2024년 12월이었는데 그때 사고가 났고 또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서 많은 부모님들을 비롯해서 국민들께서 청원을 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 취지에 공감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국방부에서 추미애 의원님 법안하고 제 법안을 검토하셔서 72페이지부터 74페이지에 걸쳐서 수정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취지는 수용하면서 법적인 체계에 맞게 그리고 더 전향적으로 안전장치, 벨트뿐만이 아니라 군수품 전체의 안전조치, 안전을 확보하자라고 하는 취지로 관련된 조항을 신설해 주셔서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군수품과 관련해서, 사실은 군수품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사고와 관련해서 일부를 강조하고자 군용차량 등등을 언급했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군수품과 관련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시행령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77페이지에 개정안을 제시해 주셨고 또 이 내용에는 군용차량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정안으로 제시해 준 것에 대해서는 개정 입법을 발의한 사람으로서 동의하고 오히려 감사드리는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한기호 위원님.

○한기호 위원 지난번에 논의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법을 논

의하기 때문에 정밀하게 다시 한번 봤습니다.

우선 현행 법령에 따르면 모든 군수품에 대한 불용결정은 법에 의해서 합니다. 군수품 관리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의해서 군수품관리법 시행령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행령을 실시하기 위한 국방부 군수품 관리 훈령이 있습니다.

따라서 군수품관리법,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군수품 관리 훈령 여기에서 법과 모든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는데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바꿀 수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 실제로 노후화된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군수품 관리 훈령을 들여다 봤어요. 지난번에는 제가 훈령까지는 못 봤는데 이번에는 훈령까지 전부 다 정밀하게 봤습니다. 노후화로 인한 위험이 예상되거나 대결함이 발생해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용을 하도록 군수품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법령으로 할 거냐 말 거냐 이것이 문제예요. 그런데 군수품 관리 훈령 제36조제1항제3호 여기에 이렇게 분명하게 노후화로 인하여 위험이 예상되는 군수품 또 대결함이 발생해서 수리가 불가능한 군수품, 이것은 불용처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만이 아니라 군용품의 모든 물건에 적용되는 것이지요.

차관님, 제가 말씀드린 것 맞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한기호 위원 따라서 이것을 안전문제 때문에 법령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은 사실 저는 과잉입법이 된다고 봐요, 지금도 훈령까지 되어 있어서 이것으로 조치가 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 물품에 대한 구분이나 이런 것들도 훈령상에 다 명시가 돼 있고 수 없이 검토가 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부대가 움직이고 있는데 법령화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어요, 법령으로 수명 연한을 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군용품은 밖에서 쓰는 것과 좀 다르잖아요. 쓰는 빈도, 쓰는 부대 여건 그다음에 환경 조건,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게 융통성 있게 운용하는 자체가 훈령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법령화하는 것은 저는 부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백선희 위원님.

○백선희 위원 한기호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추미애 의원님께서 내신 부분에 노후된 군용차량의 불용결정을 법률에 넣자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기호 위원님께서 우려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미 검토를 해 주신 내용에 이런 노후차량, 노후차량뿐만은 아니겠지요. 노후 군수품에 대한 불용결정은 이미 군수품관리법이나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훈령 등등을 포함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노후된 군수품에 대한 운용·처분에 대해서는 이미 삭제를 하고, 이 부분은 필요 없다라고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이 운용·처분에 관련된 조항을 삭제한 상태에서 제8절 군수품의 안전조치,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군용차량뿐만이 아니라 모든 군수품에 대한 안전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이 없고 ‘군용차량 등 군수품 운용의 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여야 된다’라고 해서 전격적으로 수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기호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여기서 이미 삭제됐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관님, 제가 이해한 게 맞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위원님, 정확하십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한기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려 부분이 단순한 우려가 아니고 실제로 부대에서 운용을 하다 보면 법에 세부적으로 쉽게 됨으로 해 가지고 운용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아요. 걱정이라든가 그 부분에 저는 100% 동의를 하고.

백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이게 지금 노후 장비·물자에 대한 폐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해져 있지만 운용에 있어서 안전조치에 관련된 부분들은 실제로는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법상에는 근거가 없는 게 또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5조의2와 관련돼 가지고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백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박선원 위원 방향이니까.

○소위원장 부승찬 또 의견 있으세요?

지금 어찌 됐든 69페이지 검토의견을 보면 개정안에 대해서, 아까 백선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정도는 그래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게 결국은 그것인데……

○임종득 위원 상위 규정으로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위원장 부승찬 이 정도로 해서 절충해서 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찌 됐든 유가족, 부모들이 청원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법령에 ‘안전조치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이 표현조차 없으면 좀 그런 것 같아서 이것을 검토의견에 따라 좀 수정해서 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및 제21항, 2건의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및 제23항, 2건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차례대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소위자료 80쪽 22항과 23항입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와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두 법안 모두 법률의 유효기간을 4년 더 연장하는 것은 동일하고

요. 다만 김현정 의원안에서는 지역개발계획 수립 시에 공여해제반환재산 활용 지원을 신설하는 조항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81쪽 이하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 표를 보시면요,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 현행법에는 동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6년 12월 말, 올해 말까지입니다. 개정안은 이것을 4년 더 연장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주한미군 반환기지들에 대한 환경정화사업과 용산 잔류 미군시설사업 등이 2026년 이후에도 지속적 추진이 예정인 점을 고려해서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해 보입니다. 과거 연장 연혁을 보시면 세 차례에 걸쳐 4년씩 연장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내용, 83쪽입니다.

김현정 의원이 발의하신 내용 중에 지역개발계획수립 시 공여해제반환재산 활용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현행을 보시면 행안부장관은 평택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 등을 포함하여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개정안에 의하면 지역개발계획수립 시 공여해제가 되는 반환재산의 활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이런 지역개발계획 수립을 통해서 지자체인 평택시의 발전을 위한 지역개발계획 수립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입법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은 반환받는 미군기지 일부를 매각하여 이를 세입으로 사업비용을 충당하고 있으므로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대금은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유효기간 연장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여해제반환재산 활용 지원 조항 신설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한기호 위원님.

○한기호 위원 연장할 때마다 제가 연장하는 데 항상 동의해 왔었는데 이제 한번 다시 물어보고 싶은 게, 연장을 함으로써 지금 평택시에 어떤 혜택이 가요? 의미가, 지난번에 연장할 때도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러면 뭘 더 갖겠다는 거냐, 무엇을 해 줄 수 있느냐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어떤 일이 있느냐 이런 건데 그 당시에 일부 미군들 활용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26년에서 또 연장하는 것을 한다면 평택시에 무슨 혜택이 가느냐 이거야. 혜택이 없는데 자꾸 연장하자는 게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83쪽에 정부 의견도 보시면 국방부도 신중검토, 행안부도 신중검토, 기획예산처도 신중검토,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게 신중검토는 해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가 법안심의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떤 게 돌아가는지 보이는 게, 가시적인 게 없어요, 지금. 그걸 한번 얘기해 보

라 이거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한을 연장하는 부분은 아직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이 명시적으로 최종 종료된 상태는 아닙니다. 아직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특별법은 지속 연장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뒷부분에 나와 있는 신중검토는 사실상 부동의인데요. 이 부분은 공여반환재산을 활용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매각이나 이런 것을 해서 활용하겠다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주특회계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취지에서 기획예산처, 행안부, 각 정부 부처가 다 부동의한다는 차원입니다.

시한은 아직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이 사실상…… 지금 동두천 이런 문제도 있고 한데 이게 정부 간의 협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종결이 안 된 부분들이 아직 제법, 현안들이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유용원 위원님.

○유용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법률안 제목은 평택시 등의 지원에 대한 특별법으로 돼 있는데 이 대상이 평택시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동두천이라든지 다른 용산 부분도 있고 다 관련돼 있다는 말씀이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제가 동두천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캠프 케이시, 캠프 모빌 이런 평택에 당초에 내려가기로 했던, LPP 협정 당시에 내려가기로 했던 부대들이 아직도 못 내려가고 남은 게 있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평택으로 내려가야 될 부대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면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방금 심사한 안건을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및 제23항, 2건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12시까지 해서 지금 계속해서 진행하고요.

○한기호 위원 오후에 안 하세요? 오후에 안 하시면 그냥 하고, 지금 45분인데 이것 끝났어요. 오후에 할 거 아니에요?

○소위원장 부승찬 오후에도 할 거예요.

○박선원 위원 오후 몇 시까지 하실 거예요?

○소위원장 부승찬 좀 기다려 보세요. 66항 있으니까 빨리 추진……

○박선원 위원 진행하시지요.

○소위원장 부승찬 24항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소위자료 2권 2쪽입니다.

첫 번째 항목 24항 국군조직법입니다. 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해군은 해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중작전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법에 규정된 해군의 주임무를 해상작전에서 해양작전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3쪽 검토의견 및 관계부처 의견 보시겠습니다.

검토의견 보시면요, 해상작전은 순수히 어휘적으로만 보면 바다 표면 위에서 이루어지는 작전을 의미하며, 해군은 잠수함 등 포함해서 수중에서도 하기 때문에 해군의 작전범위를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본 개정안의 부칙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도록 돼 있으나 실무적인 측면에서 관련 부서 명칭 변경 등과 같은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 정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해상을 해양으로 바꾼다고 하면 다른 법에 유사하게 해상작전으로 돼 있는 내용들도 해양작전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박선원 위원님.

○박선원 위원 해상에서 해양으로 가는 것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요. 이 뒤에 또 다른 법안 있지 않습니까, 준 4군 체제 관련해서?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박선원 위원 준 4군이 됐든 4군이 됐든 거기에도 보면 조문이 5페이지 보면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 그걸 해양작전으로 바꾼다는 말씀이지 않아요. 그리고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해병대 관련 법안, 오후에 다룰 것에서는 해군의 상륙작전이 포함돼 있습니까?

○소위원장 부승찬 예, 돼 있습니다. 오후에 그러면 같이……

○박선원 위원 똑같이 돼 있나요? 그러니까 이것을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소위원장 부승찬 통합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왜 분리해 놓은 거예요? 왜 분리하신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이것 먼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일 것 같아서 그랬는데요. 지금은 연결이 됐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왜냐하면 준 4군 체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그러면 몇 항……

○박선원 위원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소위원장 부승찬 아니요. 그러면 의사일정……

오후에 하십시오.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진중한 토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전에 해 버려야 진중한 토의 없이 확 통과가 되는데 말이에요.

○박선원 위원 위원님들께서 그냥 될 수 있는 부분은 다 입장 내놓고 안 되는 부분만 한두 개 집중 토의하면 또 다르지요.

○한기호 위원 이게 군사 용어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면 점심 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했다가 14시에 속개하여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부승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법률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34항까지 10건의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소위 자료 2권입니다.

24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4항 국군조직법 윤상현 의원 대표발의 조항입니다.

아까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해군 작전의 임무를 ‘해상작전’에서 ‘해양작전’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뒤의 해병대 독립성 강화하는 법안과 약간 연계성이 있어서 이번에 같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8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이후에 나와 있는 국군조직법 6개 개정안과 국방개혁법 3개 개정안은 해병대 독립성 강화·보장하는 것과 직접 연관된 법입니다.

표에 있는 주요 내용을 보시면요 국군조직법 일부개정안들의 내용들은 크게 세 가지 묶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병대의 주임무를 기존의 상륙작전 이외에 신속대응작전, 전략도서방위작전 등으로 개정하는 3조의 개정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해병대사령관을 합동참모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는 안 13조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가 메인이고요. 그 이외에 해병대 독립성 보장과 관련한 그 밖의 조항이 8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은 해병대 독립성 보장에 관한 내용으로서 첫 번째는 각군의 범위에 각군 앤드(and) 해병대로 바꾸는 식으로 해병대를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합참과 국직부대 군인 공통직위에서 육해공 외에 해병대 비율을 별도로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적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을 보시면요 국군조직법 기준으로 허영 의원안과 김정재 의원안의 경우는 주로 해병대를 독립 4군 체제로 개편하는 그런 내용하에서 개정안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백선희 의원님, 김성원 의원님, 황명선 의원님, 서영교 의원님 안에서는 해병대를 현행과 같이 해군 예하에 두되 해병대사령관에게 각군 총장에 준하는 수준의 지

휘·감독권을 부여하는, 즉 준 4군 체제를 통해서 그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5년 12월 31일 국방부 발표에 의하면 해병대 1·2사단의 작전통제권을 현 육군에서 해병대로 전환하는 계획 그리고 합참 등 합동부대에서 해병대 인력의 비중을 확대하는 계획 그리고 세 번째 변화할 해병대의 모습을 국군조직법에 명시하여 해병대가 상륙작전과 도서방위 등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에 반영하자는 내용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국군조직법 6건의 개정안과 국방개혁법 3건의 개정안 중에서 해병대 준 4군 체제 전환에 따라 조문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료 10쪽입니다.

국군조직법 개정안 중에 첫 번째 주요 내용, 해병대의 주임무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의 내용입니다. 현행 해병대의 주임무는 상륙작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해병대의 주임무를 상륙작전 이외에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해병대의 주임무를 해군과 별도로 분리하여 기재하고 상륙작전 이외에 신속대응작전, 전략도서방위작전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인데 1번 허영 의원안부터 여섯 번째 서영교 의원안까지 추가하는 작전 임무는 조금씩 표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이한 사항으로 황명선 의원안에서는 해군의 주임무에서 상륙작전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 밑 당구장 표시를 보면요, 이렇게 해병대의 주임무 규정을 규정하더라도 3항에 만들지 5항에 만들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이거는 연혁적으로 과거에 해병대가 폐지될 당시에 3항에 해병대 임무가 있었는데 폐지된 그 자리에 3항을 다시 넣을 것인지 안 그러면 별도로 5항에 규정할 것인지 형식적 측면의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자료 12쪽입니다.

합동참모회의에서 해병대사령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현행을 보시면 해병대 관련 사항 심의 시에만 해병대사령관이 참모회의에 참석하도록 돼 있고 당연직 위원은 아닙니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합참회의에 해병대사령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중간에 당구장 표시 보시면요, 사실상 해병대사령관은 그간 대부분의 합동참모회의에 참석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스를 보시면요, 합동참모회의에 당연직 위원으로 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하되 그 방식에 있어서 허영·김정재 의원안에서는 각군 참모총장의 개념에 해병대사령관을 포함시켜서 해병대사령관을 합참회의에 참석시키는 방식이고요. 백선희·황명선·서영교 의원안에서는 해병대사령관을 합참회의의 당연직 위원으로 별도로 표시해서 규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다음 자료 14쪽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3조와 13조가 메인이고요. 그다음에 14쪽에 있는 해병대 독립성 보장과 관련된 그 밖의 조항들은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 있는데요. 개정안의 주요 내용들을 보면 첫 번째가 해병대를 각군과 동등한 지위로 격상, 즉 각군을 ‘각군 및 해병대’로 다 표시를 바꾸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육해공군이 명시된 4장의 제목에 각군하고 해병대를 추가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항목입니다. 합동참모본부 설치 근거, 합참의장 권한 범위, 합동작전 수행 보장 주체에 각군 이외에 해병대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항목입니다.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 대상에 각군 참모총장 이외에 별도로 해병대사령관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해병대사령관이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감독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군 지휘·감독 주체에 참모총장 외에 해병대사령관도 별도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 항목입니다. 합동참모차장 정원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합동참모차장을 3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1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참차장 정원을 확대해서 3명 이내를 4명 이내로 바꾸는 안 그리고 나번 보시면 합참차장을 4인으로 의무화하고 그중에 1인을 해병대 소속으로 하자는 안도 있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입니다. 각군의 경우와 같이 해병대 소속으로 부대와 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해병대를 독립된 군종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해군 소속으로 두면서 독립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준 4군 체제로 편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 현행 국군조직법 2조상 해병대를 해군 예하에 두고 있다는 규정을 둔 상태에서 관련 조문 간의 체계 정합성 측면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다음은 국방개혁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9쪽입니다.

국방개혁법에 관한 3건의 개정안이 있습니다.

국방개혁법 3건 중 첫 번째 내용입니다. 각군의 범위에 해병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해공군이라고 되어 있는 거기에 병렬적으로 해병대라는 걸 명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30쪽입니다.

두 번째 쪽지입니다. 합참·국직부대 군인 공통직위에서 해병대 비율을 별도로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별로 해병대의 별도 비율을 0.5, 0.7, 0.5 각각 달리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취지는 해병대의 비율을 별도로 명시해서 표시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 법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처음으로 가서 24번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해군의 주임무를 해상작전에서 해양작전으로 변경하는 건 관련해서 정부는 동의합니다.

다음 25번부터 33번, 해병대의 주임무에 상륙작전에 추가해서 신속대응작전·전략도서

방위작전을 추가하는 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해군의 주임무가 해상작전과 상륙작전 지원인데 상륙작전 삭제하는 부분 관련해서도 황명선 의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해병대사령관을 합동참모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편성하는 안에 대해서 백선희·황명선·서영교 의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다음 해병대 독립성 보장과 관련한 그 밖의 조항 관련해서 해병대를 별도로 각군과 동일한 수준으로 분리하느냐 하는 문제는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대로,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는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다음 29페이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해서는 해병대를 해군 예하가 아니라 별도로 분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현 정부의 취지가 준 4군 체제입니다. 해병대를 해군 아래에 두고 4군에 준하는 체제로 간다는 그 취지에 맞춰서 준 4군 체제이기 때문에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 합참, 국직부대 군인 공통직위에서 해병대 비율을 해군과 별도로 적용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 또한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위원님들 의견.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지금 논의하고 있는 내용은 해병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부분들이고 그 관련되는 국군조직법하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각각의 부분 개정안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각각의 법안들을 개별적으로 검토하기 이전에 사실은 방금 설명한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지금의 3군 체제를 4군 체제로 바꾸자 하는 것을 기본 근거에 깔고 있는 거고요. 또 일부 법안은 4군 체제까지는 안 가더라도 준 4군 체제 정도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근거로 해 가지고 법안을 바꿔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걸 우리 국군 전체의 위상과 구조 측면에 있어서 큰 변화다.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도 있고 또 관련된 절차들을 제대로 밟아볼 필요도 있다. 그래서 이 개별 법안을 논의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해병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부분들을 전문가들과 토의도 한번 해 보고 또 여론도 한번 들어 보고 하는 가운데에서 과연 독립성 보장이 지금 그러한 임무와 역할 측면에서 꼭 필요하냐. 그러면 어느 정도가 필요하냐, 독립성이. 비효율은 없냐 하는 부분들을 검토하는 것이 선행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있어서 전략적인 부대로서의 운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해병대 임무는 그 기본적인 취지에 걸맞게 움직여지지 않고, 운용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고려도 돼야 되고. 그러면 해병대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맞게 하기 위해서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고 거기에 맞춰서 부대 구조를 가져가고 훈련을 어떻게 하고, 뭘 준비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큰 그림을 다 그리고 그 측면에서 과연 상륙작전이 대한민국 군의 차원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나, 그것도 독립된 4군 체제로 만들어 가지고 위상을 그 정도로 해 줄 정도로 필요한 거냐, 그 과정에서는 비효율은 없느냐 이런 것들이 먼저 전제된 논의가

되고 나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해병대가 충분히 우리 대한민국 군의 사이즈나 임무와 장차적으로 해외 투사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4군 체제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준 4군 체제 정도로만 할 것이냐. 그것도 아니고 지금의 해병대의 임무와 역할을 놓고 봤을 때 비효율이라든가 그다음에 독립성 보장, 균형들을 지금처럼 하면서 일부 해병대의 위치·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정도의 변화만 필요하다 이렇게 결정을 해 가는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개별 법안을 가지고 넣었다가 뺐다가, 넣자 빼자, 넣자 빼자 하는 것 자체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의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논의를, 정말 큰 변화이기 때문에 세미나라든가 청문회 등을 통해 가지고 먼저 해병대 임무와 역할,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지 여부를 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나서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있는 상태에서 법안을 하면 쉽게 통과가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는 정말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우려 사항을 잘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드린 내용을 천천히 뜯어 보시면 범위가 해병대의 근간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태를 기반으로 해서 해병대의 위상을 조금 더 제고시켜 주는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간을 흔드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한기호 위원님.

○**한기호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도 논의가 됐었는데 우리 법체계를 먼저 봅시다. 국군조직법에 명시된 것은 1번 ‘육군은 지상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아주 포괄적으로 명시했습니다. 2번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을,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4번 ‘공군은 항공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이걸 왜 제가 일일이 다 읽어 드리냐, 우리 국군조직법에는 아주 포괄적으로만 명시를 해요. 그다음에 임무가 명시 안 돼 있습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맞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지금 개정하자고 하는 것들이, 해병대가 육군이든 공군이든 전시에 하는 일을 법에 명시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나면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해서 편성되고 장비…… 이렇게 했는데 도저히 방어도 한다라고 명시하면, 전시가 되면 우리 도서는 해병대가 다 맡을 건가요? 그래서 법에다가 명시하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조직법이라는 자체가 포괄적인 성격의 것이지 임무를 구체화시켜서 명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가 하면 과거에도 방첩사령부 그리고 기무사령부를 안보지원사령부로 만들 때도 논의했는데 뭐라고 논의했나, 법에다가 명시하기에는 다 부담되는 거다. 그래서 법에다 명시하지 않고 방첩사와 이것의 기능만 운용 측면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조직법에다가 그걸 넣지 않았어요. 위원장님도 잘 알아요.

그러면 해병대를 이렇게 조직법에다가 넣고, 다 넣는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까지의 국

군 조직의 일반적인 관리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완전히 뛰어넘는 겁니다. 이건 어느 정부냐 아니냐를 따지지 말고, 옛날 문제인 정부 들어와서도 바로 안보지원사령부를 할 때 그런 논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임종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조직법에 넣을 거냐 말 거냐 이거부터 검토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법에 명시돼 있는 해병대 몫을 법으로 할 거냐 말 거냐. 일단 지금까지 국군과 관련된 조직의 운용에 대한 것들을 명시한 것을 법의 차원으로 바꿀 거냐 말 거냐 논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다면 육군·해군·공군에 대한 것도 다시 해야 돼요.

그런데 임무에다가 전시임무까지 법에다가 명시한다고 그러는데 명시하면 되겠습니까? 명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합동참모의장이 전시가 돼서 작전지휘를 할 때 특수부대로 편성해야겠다 그러면 그때 가서 하는 거예요. 작전에 대한 융통성은 최대한 보장해 줘야지만 작전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지 법에다 명시해 놓으면…… 해병대를 도서에다 묶어 놓고 뽑아서 못 쓰네, 이런 문제가 생겨.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서북도서 지휘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서방사령관한테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렇지요. 그것도 법에 명시돼 있어요? 아니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한기호 위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왜? 그건 임무이기 때문에. 국군에 대한 임무를 융통성 있게 주기 때문에 지금도 임무를 부여했으나 명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법으로 명시하겠다고 그러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 이거야. 4군 체제로 가는데 그러면 법에다 명시할 부분이 어디냐? 이게 지금 달리 생각해야 돼요.

그다음에 해병대 정원을 그러면 늘릴 거냐? 국방부 방침은 늘려요, 안 늘려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안 늘립니다.

○한기호 위원 안 늘리지요. 안 늘리고서 그러면 이걸 수용할 수 있느냐? 문제가 또 생겨요, 그러면. 해병대 정원을 늘리지 않고 이걸 수행할 수 있느냐?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전제로 깔고 국방부가 오늘 이 자리에서 사실은 얘기해야 돼요, ‘늘리겠습니다, 필요하면 늘리겠습니다. 이미 협조가 됐습니다’. 이게 돼야 돼요. 우리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행안부하고 혁신처하고 다 관련이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인원도 일단 안 늘리겠다, 전시임무는 법에다 명시하지 않겠다. 그러면 얘기가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우선 KIDA에서 이 부분에 대해 연구한 보고서가 있습니까? 제가 일부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해병대를 과거에 했다가 말았다 이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연구했느냐? KIDA가 이럴 때 연구를 해야 돼요. 연구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최소한 우리 법안소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 분씩 줘야지요,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세미나를 하든 토론회를 하는 것은 안 한다 하더라도 권위 있는 KIDA에서 연구를 한 게 있어야지요.

그러면 지금 미국은 상륙군이 이란으로 간다고 출동을 했는데, 미국은 어떻게 돼 있어

요? 미국도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상륙작전할 때 처음에 상륙할 때까지 누가 지휘합니까? 해군이 지휘하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한기호 위원 그렇습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해상 이동, 상륙 돌격 전까지는 해군이 지휘합니다.

○한기호 위원 그렇습니다. 지휘는 작전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일반 교리까지 다 무시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제가 정리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찬찬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상현 의원님안은 해상작전을 해양작전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 부분은 해군의 오랜 숙원이었는데 해상작전이라고 하면 서피스(surface), 그러니까 바다의 표면 위만 하는데 해양이라고 하면 해양, 말 그대로 수중부터 해서 표면 그리고 공중까지 해양지역 전체에서 벌어지는 작전을 포괄하고 여기에는 상륙작전도 포괄합니다. 해군이 실제로 그렇게 작전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담아 주자는 취지고요.

두 번째, 해병대 관련되는 사안은 현실적으로 합동참모회의에 해병대사령관이 배석 자격으로 빠짐없이 참가하는데 그것을 정식 합동참모위원으로 편성을 해 주라는 취지고.

또 한 가지는 법규에 우리 국군조직법상 해병대가 지금, 아까 병력을 늘리느냐 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는 병력을 늘릴 수가 없고 현재 병력으로 그대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현재 하고 있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한다는 것과 전략도서방위작전이나 신속 대응작전 두 가지 항목을 추가하는데, 이것이 새로운 임무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걸 꼭 법에 명시해야 되느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러면 임무에 지상군이 하는 거 다 넣을 거냐,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지금 해병대의 위상, 소군이고 약하기 때문에 위상을 올려 주자는 취지에서 상징적으로 문구 2개를 넣어 주자는 차원이자 군의 근간을 흔드는 건 아닙니다. 심지어 합참 내에서 해병대의 비율을 높여 주는 부분도 별도로 명시하자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중검토가 필요하고, 별도로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드렸는데 것처럼 현 체제의 틀을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병대의 위상과 명예를 고양시켜 주자는 취지로 두 가지 문구를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보세요. 합동참모회의에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의 임무와 관련됐을 때 참석하는데 항상 참석시키겠다,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것 얘기하는 거지요, 일단?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지금까지 참석을 쫓 해 왔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니까 그건 좋다, 문제없다 치고.

그러면 그다음에 법에 명시된 것 중에서 국군조직법에 해병대를 별도로 한 항목으로 떼어 내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조직법상에 어떻게 할 거예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따로 떼 내지는 않습니다.

○한기호 위원 떼어 내야지. 하려면 여기 조직법에서 떼어 내야지. 해군 속에다 집어넣어 놓고 하면 안 되지요.

○소위원장 부승찬 아까 말씀이 일리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해군 따로, 해병대 따로야 가야 돼요. 지금 개정안은 분리하는 거잖아요.

저도 약간 한기호 위원님 말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행을 떼 내고

해군은 해양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해서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3조 2항을 분리시키는 거니까. 그 부분도 생각할 필요는 있다.

정리 끝났으면 백선희 위원부터 일단 드리고요.

○**백선희 위원** 일단 임종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4군 체제로 갈 것이냐하고 준 4군 체제로 갈 것이냐 이것은 큰 프레임이기 때문에 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방부를 비롯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은 4군 체제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준 4군 체제로 가자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준 4군 체제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해군 휘하에 둔다, 해군 안에 해병대가 현재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앞에 ‘준’이라고 하는 것을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준 4군 체제라고 하는 것도 동의하지 못할 정도냐? 저는 이렇게 질문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 해병대 준 4군 체제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해병대 역사하고 국군조직법의 법률을 봤어요. 해병대가 49년도에 창설했고요 73년도에 해병대 사령부가 해체됐습니다.

근거 법을 보면 제가 63년도 국군조직법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3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3조에 1항 육군, 2항 해군, 3항 해병대 그리고 4항 공군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73년도에 해체가 됐어요. 해체가 됐으니까 근거 법령을 지워야 됩니다. 그래서 3조에 있는 3항 해병대에 해당하는 것이 삭제됐습니다. 이것은 체계상 맞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87년도에 재창설이 됐거든요. 재창설이 됐다고 하면 해병대가 실질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63년도에 있었던 법대로 3조 3항에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 장비,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고 하는 근거가 당연히 만들어졌어야 하는데 이 근거가 만들어지지 않고 해병대가 창설되고, 물론 현재 법에 보면 해군 쪽에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 부분이 이전의 상태로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별도로 해야 되는 이유가,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해병대가 어떤 임무를 수행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임무는 기존에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전략기동작전이라고 하는 것을 추가하자 정도로 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황명선 의원님 안을 보면 거기에 신속대응작전과 전략도서방위작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시점에서 신속대응작전과 전략도서방위작전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냐? 필요하다고 하는 전제로 들어가 있고 이 부분이 해병대가 해야 되는 역할, 신속대응작전과 전략도서방위작전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을 주임무로 해 가지고 지금의 국군조직법에 해병대에 대한 조항을 복원시키면서 추가로 요구되는 작전에 대해서는 추가해서 기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유용원 위원님.

○**유용원 위원** 지금 개정안이 실현되려면 해병대 장군 숫자가 늘어야 되지 않습니까, 차관님?

○**국방부차관 이두희** 이 법률과 장군 숫자가 연동되는 것은 아니고 별개로 봐야 될 걸로 봅니다.

○**유용원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실현이 되려면, 돌려막기 이런 식으로는 안 되잖아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현실적으로 장군뿐만이 아니라 합참에서 해병대의 비율을 증가시키려면 숫자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이 법률과 연동해서 이걸 위해서 숫자를 늘려야 된다 이렇게 연동하기에는 조금 제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용원 위원** 그런데 장군은 아니더라도 아무래도 고위급 영관장교라든지, 아까 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정원을 늘리는 게 맞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해병대 위상 강화, 저는 해병대가 아직도 제일 대한민국에서 좁고 배고픈 군대, 소군 중의 소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위상을 높이고 배려해야 된다는 부분은 120% 공감하는데 요지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런 안이 나오고 국방부가 상당 부분 동의하고 있는 이 상황은 현실적으로 해병대의 위상을 제대로 높이고 역할을 강화하는 데는 너무 공사가 크니까 일단은 법을 덜 건드리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방부의 성의 이런 것을 보여 주려다 보니까 이런 식의 방법이 나온 측면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까도 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해병대를, 이게 결국 우리 국가 전략하고도 연관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향후에 해병대 상륙작전 외에 다른 통일 과정, 통일 이후에 어떤 식으로 할 것이며 이런 큰 그림 속에서 해병대를 다시금 자리매김해 주는 게 저는 해병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 필요하고 적어도 KIDA 차원의, 아까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어느 정도 공감대를 확보해 가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것하고 다 포함을 해서 전체가 하나로 보이게…… 여기 의원들 이름을 쓴 것까진 좋아, 누가 뭐 한 것에 대해서 받고 안 받고. 그런데 전체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겠다는 게 있어야지 이게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법안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 바꾼 것들은 색깔을 달리하든가 이렇게 해 줘야지 날개로 다 일일이 보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국방부가 이번 안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얘기한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국방부안을 만들어서 와야 돼요. 그래야지 논의가 된다고. 국방부안이 ‘그 안에 찬성합니다, 안 합니다’ 이걸로 결정될 수가 없다니까. 이걸 가지고 한다 그러면 누구 안은 받고 누구 안은 안 받고 이게 지금 안 된다니까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추가되는 영역이 자구가 얼마 되지 않는데, 법안 상정된 게 많아서 그렇지 자구는 얼마 안 되는데 그건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다음에 윤상현 의원이 얘기한 해양에 대한 문제도 해군이 원한다, 지금 우리가 통상 해상이라고 하면 수면 위만 생각을 하나요? 지금 해상 그러면 바닷속도 다 계산을 하고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군사 용어를 바꾸는 거야. 이 용어를 바

꾸려고 그러면 군사용어집부터 바뀌어야지요. 그렇지요? 바뀌어야지. 그다음에 조직법에도 다 바뀌어야지, 해양으로. 그렇지요?

법을 바꾸야 되는 것도 엄청나게 많고 군인들이 쓰는 용어도 바뀌야 되고 그다음에 한미 간 연합훈련 하는 용어도 바뀌야 되고, 다 바뀌야 돼.

○국방부차관 이두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바뀌어 있었는데 법만 안 바뀌었습니다. 영역을 나누면 지상·해양·공중·우주·사이버·전자기 스펙트럼 이렇게 나뉩니다. 그러니까 해양이라고 썼습니다. 저희 합동작전 교범도 제가 중령 때부터 이미 바뀌어서 Land·Maritime·Air·Space·Cyber·Spectrum 이렇게 이미 바뀌어 있었는데 법이 안 바뀌었던 겁니다. 미군도 마찬가지로 Land, Maritime(해양)이라고 씁니다.

○한기호 위원 다 바뀌어 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합동작전 교범도 오래전에 이미 바뀌어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바뀐 걸 좀 제시해 보세요. 그것 제시하면 다 바뀌었는데 위원님들이 부동의할 사람이 어디 있어?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한기호 위원 그다음에 여기 우주 문제도 공군하고……

○소위원장 부승찬 정리해 주십시오, 손 드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기호 위원 우주,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법에 조직이 들어가 있어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우주는 각군이 우주와 관계없는 군이 없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그것도 지난번에……

○국방부차관 이두희 다 임무별로 군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것 때문에 논의가 여러 번 됐거든. 과거에도 우주가 누구 거냐 때문에. 그래서 해병대도 정리를 하지 않고 그냥은 안 돼요.

○소위원장 부승찬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아까 발언에 이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데 해병대의 임무와 역할과 관련돼서 문구 몇 개 바꾸는 걸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답변하는 차관님의 생각 자체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군 생활을 많이 하셨잖아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임종득 위원 지금 사실은 문구 하나를 바꿔 가지고 준 4군 체제가 되든 4군 체제로 간다고 했을 때 바뀌어야 될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임종득 위원 그런데 거기까지 갈 생각은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개정안에 나오고 있는 여러 의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선별적으로 이것 이것만 받아들여 주고 나머지는 신중 고려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구하면 그때그때 마지못해 가지고 단어 바꿔 주고 용어 바꿔 주고 사람 하나 더 집어넣고 이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각 의원들이 제기한 해병대의 임무와 역할과 관련된 내용들에 보면 도서방위 임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해병대 임무에 속합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어

가지고 해병대가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지요? 그걸 지금 법으로 반영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법안들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국방부 차원에서는 지금 우리 국방의 임무가 뭐고 해야 될 역할이 뭔데, 그중에 육해공군이 어떻게 되어 있고 해병대가 지금 역할을 해 왔는데 지금 이 부분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전체 검토해 보는 과정에서 임무와 역할의 배분이 있어야 되는 거고.

해병대가 준 4군 체제로 간다고 했을 때 아니면 4군 체제로 간다고 했을 때 그 필요 여부를 정리한 다음에 기존에 있는 임무에 관한 배분도 달라져야 되고 거기에 따른 무기 체계라든가 인원에 대한 배분, 구조에 대한 배분도 바뀌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하나도 이야기 안 하고 그냥 ‘회의 참석하는 걸 좀 해 주십시오’, ‘단어 이것 바꿔 주십시오’ 지금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해병대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 단어 바꿔 주고 용어 바꿔 주고 법안을 내 가지고 지역구에 해병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 어필하기 위해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국방부는 이 문제를 접근할 때 근본적으로 접근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답을 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부분이 옳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림은 안 그려진 상태에서, 국방부 그림은 안 그려진 상태에서 요구하는 법안에 대해서 이것은 되고 이것은 신중검토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주 이상한 그림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합동참모회의 참석, 해병대사령관이 매번 참석했다고 그러는데 매번 참석하면 넣을 필요 없지요. 이게 다 이유가 있어 가지고 각군 참모총장은 당연히 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임종득 위원 해병대사령관이 자주 참석했지만 4군 체제에 안 돼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갔던 거예요. 거기에 넣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넣는 순간 4군 체제를 인정하는 거냐?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갔을 때 ‘사이버가 되게 중요한데 사이버사령부 아니면 우주사령부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또 원칙 없이 넣었다 뺐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4군 체제에 대한 부분을 할 거냐 말 거냐, 진짜 이게 필요하냐, 필요하다면 어디까지 갈 거냐 하는 부분들의 검토는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걸 가지고 위원들을 설득시키고 그래서 이것은 안 되고 이것은 이렇게 가야 된다는 논리가 나와야지 거기서 단어 몇 개 바꿔 주고 회의하는 데 참석하게 해 준다, 그다음에 합참의 참모 인원 수 더 늘려 주는 걸로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라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됩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똑같이 고민을 했고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반도에서의, 우리 한국군에서의 해병대 역할을 향후에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하는 전략적인 빅픽처를 보는 게 아니고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저희가 그렇게 접근을 했는데, 해병대가 과연 인천상륙작전처럼 그렇게 할 것인가. 과연 미군들이 1도련선, 2도련선, 에이브람스 전차를 놓고

도련선 방어에 하는 것처럼 어떤 전략적 변화를 모색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동시에 있어야 된다는 부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해를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안 심사에 저희가 집중하다 보니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다는 부분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박선원 위원님.

○박선원 위원 일을 너무 크게 벌이는 것 같습니다, 임 위원님은.

사이버사령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사이버사령관이 합참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전략사령부 있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현재 대표적으로 3군 체제인데 해병대의 역할과 임무를 분명하게 설정해 주고 그리고 그 위상을 높여 주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금 법안을 제출했잖아요. 그러면 일단 다 비슷하지만 제일 포괄적으로 많은 것을, 예를 들면 황명선 의원안을 놓고 본다 아니면 서영교 의원이나 허영 의원안을 놓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답을 가져오신 거잖아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박선원 위원 백선희 의원안은 그냥 황명선 의원안으로 통합될 수 있다고 보면 저는 크게 문제가 없고, ‘해상’을 ‘해양’으로 바꾸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치면 5번 있잖아요. 황명선 의원안 제3조 5항에서 아까 임종득 위원이 지적한 가운데 전략도서방위작전 있지 않습니까? 전략도서방위작전은 주로 서해5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남해, 거제도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국방부차관 이두희 경우에 따라서는 제주도나 이렇게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박선원 위원 제주도,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중요한 섬을 지켜야 될 때, 예를 들면 제주도를 지켜야 될 때 거기 육경이 지키겠어요, 그 안의 해안경비대가 지키겠어요? 그렇다고 해군이 배에서 내려서 지킬 수도 없으니까 해병대를 급파해서 그런 임무를 주임무로 삼게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서해5도는 더욱 중요하고요.

그러면 해병대가 이동할 때 선박을 이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신속대응작전하고 전략도서방위작전이 주임무인 것은 맞잖아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박선원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상을 확보해 주고 거기에 여러 임무가 있지만 이것만이 해병대의 임무는 아니지요. 주임무는 이 정도로 설정해서 통과시키는 게 특별히 문제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해양작전이라는 말을 해군에서 쓰고 그다음에, 왜냐하면 이미 교리나 이런 데서 다 쓰고 계신다면서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박선원 위원 마리티임 포스(maritime force)라는 것도 그런 거지요. 네이비(navy)하고 조금 더 넓어지는 개념이기는 하잖아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렇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리고 해양세력 안에서 해군 일대하고 네이비하고 마리티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했을 때 교리에서 랜드(land)하고 마리티임하고 또 다른 거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박선원 위원 그러니까 작전용어로서 이미 해양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으면, 황명선

의원안을 기준으로 해서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자꾸 근본적으로 그림 다시 그리자 하면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 언제 하겠어요? 그런 앞으로 계속해서 교리도 발전시키고 더 세분화시켜 가지고 다음에 국방부에서 정부안으로 추가로 내시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제가 답변드리면……

○박선원 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정부안으로 내고, 지금 여기 있는 여러 의원님들의 안 중에서 황명선 의원안을 기준으로 해서 뗄 거 떼고 정리해서 이번에 처리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백선희 위원님.

○백선희 위원 저도 말씀에 동의하고요.

물론 우리가 우주군도 중요하고 사이버안보도 중요하긴 한데 현재 국군조직법에는 그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고 육해공군하고 해병대 들어가 있고 해병대사령관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조금 명확히 하자라는 거고.

지금 사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국방부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내셨으면 검토를 다 하셨거든요. 검토를 다 하셨으면 이게 정리된 안이 있어야 되는데 정리된 부분이 없으니까 저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군조직법 이 하나만 보면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조 3항에 해병대 부분이 있었는데 애가 없어져 가지고 법에서 빠졌다가 다시 87년도에 재창설됐으면 넣어야 되니까 다시 이걸 원복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무엇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3항에 들어가든 5항에 들어가든, 국방부에서는 3항에서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원래대로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상륙작전 이외의 것들이 들어가서 그러지만, 지금 황명선 의원님 안을 보면 ‘해병대는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상륙작전, 신속대응작전, 전략도서방위작전—이렇게 작전이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뒤에 있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쪽하고 육해공군은 동일하니까요.

그러면 상륙작전은 기존에 있었던 것이고 전략도서방위작전이라고 하는 것도 특수성이 있어서 인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셨고 신속대응작전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지금 해병대 교본에 이미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육해공군 쪽에 신속대응작전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현재로서는 해병대 고유 임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속대응작전도 저는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3항은 어쨌거나 해병대와 관련된 것을 다시 되살린다고 하면 기존의 해병대가 3조 2항에 언급이 되어 있지요. 해군과 같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안에는 해군이 해상작전을 한다 그리고 뒤에 해병대는 뭐뭐뭐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요. 이 부분은 당연히 빠져야 되지요, 3항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황명선 의원님이 정리를 한 게 2항에 ‘해병대를 제외한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법안 중에서 준 4군 체제가 아닌 4군 체제로 만들자라고 하는 앞에 제안한 의원님들의 법안은 제외하고 준 4군 체제로 하자라고 하는 의원님들의

법안은 제가 보기에는 황명선 의원님 법안으로 3조 2항·3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관님께서 조금 정리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데 정리는 이미 됐었어야 되고요. 조속히 국방부에서 지금 갖고 있는 안, 그것이 황명선 의원님의 안이든 약간의 자구 수정이 있든 국방부의 안을 명확하게 저희들한테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차관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이게 정부입법안이에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의원입법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면 의원입법에 대한 각 조문별로 검토해서 동의 여부를 결정하지요, 국방부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입법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 본인들이 개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가는 법이잖아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입법하고 의원입법을 혼돈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각 정부부처는 모든 입법에 대해서 정부가 정리한 안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여러 안이어서 복잡해서……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법안소위 위원장 하면서 약간 국방부가 억울한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 버리면 모든 공통의 법률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만들어 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고. 그건 아니지요. 법안소위 하면서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부승찬 개정안이 나왔어. 그런데 의원들이 유사한 법들을 발의했어. 그러면 정부입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있는 걸 검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법을 검토할 때 이것은 정부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어 의견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합동참모회의하고 그다음에 3조 2항을 분리시키는 것에 대해서만 동의하시는 거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나머지 몇 대 몇 대 몇, 이것은 동의 안 하는 거잖아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안 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끼리 논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가. 정부에서는 이 세 가지 안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여기 소위 위원님들은 몇 가지 안에 대해서 나는 이것 더 늘려야 된다, 나는 서영교 의원안의 몇 조 몇 항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것 국방부에서 다시 검토해라 이런 식으로 저는 소위가 진행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봤을 때 국군조직법은 모법이에요. 추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소위원장 부승찬 추상적인데 이 법이 모든 것들을 규율하고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잖아요. 개념적으로 정리를 해 주는 거지요. 그간에는 해군이 이랬으니, 지금은 해군의 주임무가 이렇게 됐으니, 해병대의 주임무가 이렇게 됐으니 이 2개는 겹치는 부분이라든지 작전상의 혼선 때문에 분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의원들이 입법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입법을 한 거고.

그러면 주임무가 세 가지예요. 상륙작전, 상륙작전은 현행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2개가 추가된 거잖아요. 그러면 위원님들은 이 2개 추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지,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이 말씀을 해 주시면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4군 체제하고도 저는 관련 없다고 봐요. 왜? 4군 체제로 가려면 독립군으로 운영한다, 독립 군중별로 운영한다가 법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법은 임무의 성격에 대해서 규정하는 거지요. 그동안은 하나로 합쳐져 있던 것을 상륙작전, 신속대응작전, 전략도서방위작전을 빼낸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해병대 고유 주임무로 넣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소위원장 부승찬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의를 해야지, 그러면 앞으로 법안소위는 국방부에서 모든 걸 안 가져오면 모든 의원들의 법은 막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건데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혹은 추가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주시면, 나는 여기 동의 못 한다 그러면 계속 심사가 되는 거고 난 동의한다, 이 부분을 빼면 나는 동의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 줘야지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똑같은 얘기 전부 반복이에요.

그래서 위원장 직권으로 이것은 이 정도 선에서 추후 더 논의하는 걸로 하고 그 선만은 지켜 줬으면 좋겠다. 입법에 있어서 의원입법과 정부입법안은 다르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계속 심사하고 정부입법안으로 내겠습니다, 차관님이 그 말씀 하시면 정부입법으로 올리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좀 더 심사하는 데는 편해지니까.

하지만 국회도 다 1인 헌법기관인데 국회의원들의 입법을 이렇게 묵살할 수는 없는 거지요. 소위 문턱조차 못 넘게 막는 것도 안 된다고 봐요. 지금 정부가 동의하는데 의원님들 여러 분이 만들어 놓은 안을 그냥 여기서 잠재우는 것도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주장들이 다 각양각색이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이것 계속해 봐야 도돌이표예요. 그래서 계속 심사하는 걸로 일단 가시고요.

이 안을 정리할 때 어찌됐든 정부입법안이 됐든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소위 위원님들만이라도 국방부가 찾아가서 설명을 좀 해 주고 이런 부분들은 논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 같다.

그런데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4군 체제 이런 것도 전혀 나와 있지 않고 그다음 합동참모회의도 해병대사령관들이 두 가지 방식인 거지요. 지금 3군 체제에서 총장들만 가는데 왜 가냐? 해병대사령관은 왜 당연직으로 넣었냐 이것하고, 당연히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어찌 됐든 해병대사령관은 독립작전을 지휘하잖

아요. 서북도서방어사령관도 하면서 독립작전에 대한 지휘를 하잖아요. 그게 그냥 해병대 문제는 아니잖아요, 각군과 얹혀 있는 문제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임무 성격, 작전의 성격에 따라서 당연히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도돌이표니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통과가 어렵지 않냐. 그래서 이 부분하고…… 맞지요? 통과 어렵지요?

○백선희 위원 그래도 한 번 더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기호 위원 말씀드릴 게 하나 있어요.

○소위원장 부승찬 한 시간째 이것에 대해서만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한기호 위원 진지하게 해야지요.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면 한 번씩의 기회를 줄 테니까 다른 얘기 좀 해 주세요, 똑같은 얘기 반복하지 마시고. 이미 충분히 다 이해했으니까.

한기호 위원님부터 갑니다.

○한기호 위원 우선 특수작전이라고 여기에 명시했는데 이 특수작전에 대한 정의, 이걸 우리 의원들이 낼 수는 없어요, 뭘 특수작전이라고 하는 것인지. 여기 의원님들 낸 것 중에 도서방위작전을 전·평시를 똑같이 보는 건지 이것도 분명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시 임무는 여기다 명시하기가 곤란하다.

그다음에 전략기동작전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략기동작전도 용어의 정의가 뭘지 머릿속에 안 그려져요, 그다음에 신속기동작전은 뭘지.

군사적으로 이 4개가 분명하게 보여야지만 법률용어로 쓸 수 있으니까 다음에는 국방부가 이 4개의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안이 아니라 국방부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감사합니다.

뭘 수 있는 한 짧게 좀 해 주세요,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지금 국방부에서 각 의원들이 제출한 개정안을 봤을 텐데 일단 육해공군 차원에서 정의한 내용하고 해병대 정의한 내용이 좀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육해공군은 아주 개념적인 부분만 하고 메인 작전은 하나만 언급하고 있는데 지금 3개를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임종득 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 법안 자체의 워딩 차원에서 일반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부분들은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의견을 좀 주시고.

두 번째는 전략도서방위작전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걸 해병대 임무가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병력의 부족함, 육군 병력의 부족함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서해도서에 대한 임무, 도서방위작전을 주고 있는데 이게 해병대의 주요 임무인 상륙작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그걸 법에다가, 그것도 조직법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것을 찬성하십니까?

그 부분도 한번, 해병대 위상 강화라고 얘기를 하면서 해병대 임무하고 관계도 없는 경계 임무를 주는 것 자체가 해병대 위상 강화인지 제가 묻고 싶어요. 그런 부분들도 국방부 차원에서는 의견을 줘야지요. 왜냐, 의원들이 안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떻다라는 평가를 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토해 가지고 다음에 한번 논의를 하지요.

○소위원장 부승찬 임종득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다른 데는 무슨 지상작전하는데 여기는 한기호 위원님이나 임종득 위원님 말씀, 신속대응작전이 뭐고 그다음에 전략도서방위작전 범위는 어디까지 하는지 이런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법으로서 명쾌하게 이해는 안 되거든요. 다른 군들은 특정 분야, 해양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공중작전을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유독…… 그러면 나머지 작전은 안 하는 거예요? 주임무가 아니예요? 그냥 부수 임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해군하고 해병대를 떼어 놓는 데 이의를 가졌으면 좋겠다. 혹시 제가 제안하면 동의해 주실 겁니까? 그냥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장비를 갖추고 교육·훈련을 한다 이렇게 정리해서 가면 동의해 주실 건지.

동의 못 해요?

○임종득 위원 다음에 합시다.

○박선원 위원 그런데 우리 냉정하게 돌이켜봅시다. 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 측면도 있잖아요.

○임종득 위원 전혀 없어요.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박선원 위원 진지하게 파고 들어 가지고 준 4군 체제 하면 되지.

○임종득 위원 제가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게 발목잡기가 아니잖아요.

○박선원 위원 나머지는 아까 존경하는 임종득 위원님 말씀 잘 하셨는데 이번에 이란·중동 사태까지 다 합쳐 가지고 빅피쳐로 우리 군이 어떤 식으로 대한민국을 제대로 지키고 싸워서 이겨야 될지 새로 짜야 되는 것은 작게 수준에서 이야기가 될 거고 지금 조직법에 관한 건데 그것을 빅피쳐까지 나가 버리면 안 되지요. 해 줄 건 해 줘야지. 미안한 이야기지만 육군이라고 해서 그러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임종득 위원 당연히 아니지.

○박선원 위원 당연히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차관님까지 다. 진심으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은근히 사보타주(sabotage)하고. 입장 바뀌어서, 부승찬 위원장이 정리한 걸로 하면 끝나잖아요. 그걸 왜 안 해 주려고 자꾸 그래요, 뭐가 복잡하다고?

황명선 의원안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5번에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한다’ 해서 끝냅시다, 그러면. 그렇게라도 한 발 한 발 나가는 거지 뭘 여기 걸 이리 갖고 오고 저기 걸 여기다 붙여 가지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움썹달썹도 못 하게 하고 계세요? 아무리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이라고 해도 내가 원하는 건 하고 나머지 것은 다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한기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뭘 원하는 것만 하고 안 원하는 건 안 해. 그런 얘기하시면 안 되지.

○박선원 위원 그동안 제가 느낀 걸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한기호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게 매도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박선원 위원 매도는 아니고 제 느낌이 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백선희 위원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 한기호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지금 어떻게 위원들한테 그따구로 얘기해요!
- 박선원 위원 내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 소위원장 부승찬 다 일리 있는 말씀들이고요.
- 한기호 위원 일리 있는 얘기지! 왜 아니예요, 아니기는!
- 박선원 위원 아니, 한 위원님 말씀이……
- 한기호 위원 뭘 고집하려고 그래요? 고집하는 게 아니고 합당하게 얘기하는 거지요!
- 박선원 위원 내가 고집이라는 말은 안 썼어요, 위원님한테.
- 소위원장 부승찬 잠깐, 한기호 위원님 잠시……
- 한기호 위원 시비 걸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어야지.
- 박선원 위원 시비 거는 게 아니고 결과를 맺어 가고 결론을 내자는 거지요.
- 소위원장 부승찬 위원님, 잠시만 정숙해 주세요.
- 한기호 위원 결론을 안 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는 거지 내자는 게 어디……
- 박선원 위원 가급적 내야지요.
- 한기호 위원 혼자서 그렇게 내자고 강요하는 게 어디 있어요!
- 박선원 위원 뭘 혼자 내자고 그래요, 이렇게 많이 안이 올라왔는데!
- 한기호 위원 많이 올라왔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요, 거꾸로 얘기해서!
- 박선원 위원 그래서 단순하고 간략하게 하자고 부승찬 위원장이 이야기했으면……
- 백선희 위원 관심이 있어서 많이 올라온 것입니다.
- 한기호 위원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니까!
- 박선원 위원 뭐가 안 돼요, 되구먼.
- 백선희 위원 관심이 있어서 많이 올라온 거고요. 저도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한기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양하게 올라왔으니까 논의할 소요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 소위원장 부승찬 백선희 위원님.
- 백선희 위원 저는 황명선 의원님 안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정의에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부승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륙작전만 넣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병대가 49년에 창설되고 73년에 해체가 돼 가지고 법에서 없어졌고, 그런데 87년에 재창설됐는데 법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원복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 예전에도 있었던 것이 상륙작전이에요. 그리고 전락도서방위라고 하는 것은 서북도서 방위사령부라고 해 가지고 이미 그것을 업무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속대응작전이라고 하는 것도 없는 개념이 아니라 이미 해병대 기준교범에 신속대응작전은, 핵심만 말씀드리면 전구작전에서 전략적·작전적 수준의 임무를 수행하는 작전이다 그래서 한 서너 줄 정도로 개념 정의가 있어요, 이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대응작전이나 도서와 관련해서 지금 동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만으로도, 상륙작전을 포함해 가지고 이번에는 회복하는

수준에서라도 우리가 성의를 보여 주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사실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옳으신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3조 2항을 쪼개고 그다음에 합동참모회의에 해병대사령관을 당연직으로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3조 2항의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해군과 해병대를 쪼개서 해군은 해양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렇게 하면 동의 못 하시나요, 이것도? 우리 한 발짝이라도 더 갑시다.

이것은 전혀 밑에 영향을 미치는 게 없잖아요. 교육·훈련에 영향을 미치는 것 외에는 없기 때문에 한 발짝이라도 더 가는 차원에서 하고 모자란 부분은 정부안으로, 정부가 입법을 하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건 어떻겠냐 하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결국 국군조직법은 소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 3조 2항에 대해서, 분리만 시키는 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동의하는 것 같으니까 이것만 분리해 내자, 이 안에 대해서도 동의 못 하는 겁니까?

○임종득 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이 이게 준 4군 아니면 4군으로 가느냐의 부분들의 논의를 전제로 해서 국군조직법에 그 부분들이 포함되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논의 안 된 상태에서, 3군 체제하에서 해병대 임무에 관한 부분들이 별도로 떼어 나오는 그 순간 이것은 사실상 4군 체제로 가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됐느냐 이거예요. 국방부 차원의 검토가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국방부는 4군 체제로 갈 계획이 없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준 4군 체제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주 간단한, 국군조직법 속에서 해병대를 떼어 내는 일이지만 이 부분은 결국은 3군 체제에서 4군 체제로 가든 준 4군 체제를 인정하든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전제가 되는 거고요. 그 전제가 되기 때문에 국방부 차원에서는 검토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해병대 임무와 역할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정리가 되고 나서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4군으로 간다면 4군에 맞는 위상의 법적 개정들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고민들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법조문을 바꾸려고 그러고 게다가 세부적으로 넣으려고 이야기하니까 우려를 표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아니, 법조문에 해병대는 해군에 둔다고 돼 있어요. 그것을 바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 오해하시는 것 같고.

○임종득 위원 그것 자체도 이상하잖아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국군조직법 2조는 변화가 없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2조에 변화가 없어서 결국 전반적인 지휘권은 해군참모총장이 지휘를 하는 거지요. 4군 체제로 가려면 해군·해병대 이쪽, 2조를 바꿔야 되는 건데 3조는 주

임무와 교육·훈련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선원 위원 그리고 29페이지에 있잖아요, 준 4군 체제로의 전환이라고. 국방차관은 그걸 이야기하시면 되지요. 왜 검토가 없었다고 그러세요? 검토를 해서 준 4군 체제로 한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29페이지 보면?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그렇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것에 입각해서 말씀하시면 되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먼저 ‘국군은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국군조직법 2조 1항 그 부분은 변화가 없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4군 체제는 아니고 현재 해병대를 해군에 두는 그 체제하에서 해병대의 위상과 기능과 역할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준 4군 체제로 국방부는 안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고 현재 상정된 법률안도 그에 적합한 부분이 상당 부분 있어서 해당되는 부분은 국방부에서 동의를 했고, 아예 해군에서 해병대를 떼서 4군 체제로 가는 부분은 국방부에서도 신중검토로 해서 동의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박선원 위원 그렇지요, 그게 입장인 거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백선희 위원 동어 반복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60년대 법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60년대에 해병대…… 3조에 해병대 조항이 들어간다고 해서 4군 체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이예요. 이미 60년대 법에도 말씀드렸듯이 해병대가 3조에 들어가 있었고, 그런데 이때는 육군·해군·공군만 있기 때문에 3군 체제이지 이때를 4군 체제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원복한다라고 하는 의미로라도, 최소한으로 들어가더라도 3군 체제 중심 그리고 해병대의 분명한 역할을 독립시켜서 기술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임종득 위원님, 한기호 위원님, 이번에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차관님, 그러면 보세요.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 이렇게 명시했는데 그러면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이 용어를 뺐니까, 바꾼다면?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해군은 해양작전을 중심으로 하고……

○한기호 위원 아니지요. 상륙작전은 바다에 떠 있는 기간 동안은 전부 해군이 지휘합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맞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다음에 육상작전을 할 때는 해병대사령관이 지휘하지 않습니다. 상륙작전 지휘는 별도로 구성을 다시 합니다. 지원도 해야 되고, 거기에는 해군이 지원해야 되고 공군도 지원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별도의 사령관을 임명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하여 해상작전’ 하고 쓴 것은, 제가 교육사령관 출신이거든요.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에 대한 용어를 그대로 써야 돼요, 상륙작전을 지휘할 수밖에 없도록 교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상륙작전도 해병대사령관이 직접 지휘하지 않습니다. 합동사령관이 별도로 임명됩니다. 그리고 해병대사령관은 상륙군만 지휘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륙작전이 기본적으로 탑재로부터 해상이동 또 지원까지는

해군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상륙돌격부터 해서 상륙군 지휘관, AO를 담당하는 상륙군 지휘관이 상륙작전을 지휘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해군의 임무에서 해양작전이라고 함은 상륙작전의 초기단계까지 지원하는 부분을 다 포괄하는 해상작전보다는 좀 더 큰 그릇이라는 것이고……

○한기호 위원 해양이라고 했다고 해서……

○국방부차관 이두희 해군의 입장이기 때문에……

○한기호 위원 상륙과 이것은 또 전혀 별개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그걸 다 포괄한다는 겁니다.

○한기호 위원 그 속에 포함시키면 안 돼요. 상륙은 육지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해양이라고 해서 거기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상륙작전은 교리가 분명히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의 교범이 있습니다, 별도의 교범.

○국방부차관 이두희 해군의 교리가 해양작전이라고 함은 상륙작전도 포함한다는 게 해군의 입장입니다.

○한기호 위원 아니에요. 해양에 상륙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함 안 됩니다. 상륙작전은 교범 자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합동교리·교범으로.

○소위원장 부승찬 지금 작전지휘권 논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임무를……

○한기호 위원 떼어 내자고 하니까.

○소위원장 부승찬 여기에 보면 각군의 주임무입니다. 이게 작전지휘와 관련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작전지휘는 밑에서 교리 차원에서 하거나 이렇게 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조문에 나와 있잖아요, 각군의 주임무.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현행법에.

○한기호 위원 그러면 2항에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이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상륙작전을 포함한’ 이 용어를 빼냐 넣느냐 이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양작전을’ 이렇게 써야지 상륙작전을 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예를 들면 상륙작전을 해병대로 별도로 항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백선희 위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한기호 위원님.

○한기호 위원 교리상으로 분명하게 돼 있는데, 상륙작전 교범은 육군 교범도 아니고 해병대 교범도 아니고 합동교리·교범으로 별도로 있습니다.

○유용원 위원 저는 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해병대사령관이 상륙작전부대의 한 부분이지, 그렇지 않아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포함해서 대안이, 타협안이 이루어진다면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이게 해군의 항목도 바뀌야 돼요, 그러면.

○임종득 위원 검토하고 논의합니다. 지금 국방부의 전체적인 검토 수준이……

○유용원 위원 지금 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큰 문제 아닌 것 같은데요.

○백선희 위원 저도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유용원 위원 포함해서 하세요.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면 지금 해군은 바꾸지 말고요 그냥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을 주임무로 한다’ 분리를 시켜요, 그러면

○한기호 위원 해양작전으로 또 바뀌야 된다는 거지.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니까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양작전.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러니까 해병대를 3항으로 떼어 낼 수 있다면 한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수용 가능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이것은 제3조 각군의 주임무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무슨 작전을 주임무로 하느냐라는 건데 이걸 심층적으로 논의할 게 아니고 각군에서 내거는 주임무가 뭐냐, 제일 앞에 오는 게 뭐냐 이것 아니에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렇기 때문에 한기호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을 시켜서 그러면 전부 해양으로 바뀌었다잖아요. 그런데 해상을 쓰는 건 지금 이 법에서만 해상이 나온 거 아니에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면 미군 교리도 그렇고 미군 법도 그렇고, 그렇지요? 전부 해양을 쓴다는 것 아니에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미군 법은 못 봤는데 교리는 마리타임(maritime)이라고 통상 해양을……

○소위원장 부승찬 그래서 해양으로 다 바뀌었는데 우리만 서피스(surface) 개념을 쓰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양작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한기호 위원 예, 저는 뭐……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면 2항을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양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그다음에 3항은 신속대응작전이라든지 전략도서방위작전을 빼고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한기호 위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이거를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1·2·3·4 이렇게 할 것이냐, 2항에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을 위하여’ 이렇게 하고 2항 가에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장비한다고 할 것이냐. 그러니까 각군의 주임무이기 때문에 4군 체제는 아직은 아니더라고 하면 2항 가로 만들어야 돼요.

○소위원장 부승찬 좋은 의견 같아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역시 위원장님 대단하십니다.

○한기호 위원 그렇잖아요, 실제로.

○소위원장 부승찬 다 모르시지요? 못 봤지? 그러면 2-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한 단계만 더 나갑시다. 그래서 나중에 또 필요한 부분들 검토하고 공청회하고 그다음에 환경평가하고 토의하고 해서 그 토의한 안을 중심으로 해서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에서 이것을 입법화를 좀 더 보강한다 하면 그렇게 가시는 건 어떻습니까?

이게 각군의 주임무이니까 해병대는 4군 체제가 아니잖아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면 일리 있는 말이지요. 각군의 주임무에는 안 들어가지요. 그

려면 2-가가 되겠지요. 가로 해서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 이렇게 뒤엎말은 똑같이. 이렇게 하면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한기호 위원 예.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니까 이제 절충안들이 만들지는 거고 한 단계 나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합동참모회의는 동의하시지요?

○한기호 위원 특별히 이의 없어요.

○소위원장 부승찬 이의 없으시지요?

○한기호 위원 해병대사령관이 귀찮을 거예요.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면 이 안은 그대로 가는 거고, 그렇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동의해 주시면 받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면 합동참모회의는 13조 2항을 수정하는 결로, 당연히. 그러면 되는 거지요? 정리됐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위원장님 한말씀드리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부승찬 뭐가 문제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내용은 똑같이 하면 되는데요. 법제적으로 가지 조는 2조의1 이런 걸 만드는데 항은 가지 조가 들어가면 2항의 가 이렇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아까 백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래 3항이 해병대 조항이었다가 없어졌기 때문에 해병대를 부활한다는 취지로 그냥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이 순서대로 3항에 신설하면 해병대를 분리해 내서……

○한기호 위원 그러면 각군이 돼 버린다니까, 분리가 완전히 되는 거라니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한기호 위원님 말씀하신 2-가항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소위원장 부승찬 아, 그게 안 돼요?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법제적으로는 2항 가라는 건 없습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런데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2조에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라고 해병대가 해군 예하에 있다고 이미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여기서 1, 2, 3이 나열된다고 해서 해병대가 각군이 되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한기호 위원 73년도에 삭제가 됐잖아요, 3항이. 당시에 삭제된 3항 읽어 보세요.

○백선희 위원 3항을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리면—이게 63년도예요—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한기호 위원 이걸 삭제했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넣는다는 것 아닙니까?

○백선희 위원 그것은 해병대가 해체됐으니까 당연히 빠져야 되는 거지요, 해체돼서. 지금은 해병대가 있고.

○한기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백선희 위원 잘못된 거지요.

○한기호 위원 그게 각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당시에 삭제를 한 거지.

○백선희 위원 그것은 해병대가 해체됐기 때문에 관련된 조항을 한 것이고……

○한기호 위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해병대는 그 이후로 계속 강화되어 왔어요.

○백선희 위원 87년도에 다시 재창설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이미 현재 법안 제2조 국군의 조직에 ‘국군은 육군, 해군, 공군으로 조직하며’, 3군 체제 그리고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라고 하는 게 2조에 이미 국군의 조직에 대해서 3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항을 넣는다고 해 가지고 큰 무리는 되지는 않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다가 해병대를 73년도에 뺀 것을 다시 또 넣어서 똑같이 살린다는 게 안 맞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무리가 있는 거예요.

○백선희 위원 해병대가 만들어졌으니까 당연히 근거를 넣어줘야지요.

○한기호 위원 왜 그걸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때는 그러면 73년도에 뺀 사람들은 국방위원회에서 뺐지 다른 사람이 뺐어요?

○백선희 위원 그때는 해병대는 해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자, 각군의 주요 임무잖아요. 그러니까 2조에 있어도, 한기호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각군이라는 말을 빼고 군의 주임무 등으로 바꾸시지요, 군의 주임무. 각군 하면 해병대도 각군에 들어가 버리니까 4군 체제로 오해할 수 있거든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한기호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2조에 분명히 나와 있지만 각군의 주임무를 그냥 군의 주임무로 하면 문제가 안 되지 않냐.

물론 여기서 또 반론은 그러면 다른 군은 뭐냐 이렇게 나올 수는 있지만 결국 해병대까지 포함해서 4개만 넣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렇게 보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백선희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래서 각군 하면 4군 같잖아요. 그래서 군이라고 하면 4군 체제를 인정하는 게 아니다, 2조에도 나와 있고.

○임종득 위원 제가 의견 하나 낼까요?

○소위원장 부승찬 예, 말씀해 주십시오.

○임종득 위원 지금 2항에 있는 해군에 대한 워딩이 끝나고 나서 2항에 연속으로 해 가지고 아까 나왔던 그 워딩을 넣으면 문제가 없잖아요. 육해공군 3군에 대한 임무에도 그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별도로 끄집어내 가지고 3으로 하고 그다음에 4를 공군으로 하지 말고 2에 해군을 주 기술을 하고 이어서 해병대는 해 가지고 주 기술하면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지.

○한기호 위원 항을 만들지 말고 그냥 쓰자 그 얘기지요?

○임종득 위원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백선희 위원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임종득 위원 왜 아니지요?

○백선희 위원 왜냐하면 그게 지금 3조 2항을 개정하지 말자라고, 지금 동일하게 되어 있거든요.

○임종득 위원 아니요, 그 워딩을 넣자 이거야. 넣되 그렇게 넣자.

○**백선희 위원** 왜냐하면 지금 되어 있는 것이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을’ 그리고 상륙작전이 있으니까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해군이 해병대와 관련된 편성과 장비와 교육과 훈련을 다하는 것으로 읽히거든요.

○**소위원장 부승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위원장이 받아 안았어요. 그러면 저하고 수석전문위원한테 맡겨 주시면 잘 정리해서……

○**한기호 위원** 아니, 동의 얻어야 돼요.

○**소위원장 부승찬**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동의해 달라고.

지금 이걸 분리하느냐 합치느냐의 논쟁이잖아요. 서로 양보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단계라도 저는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도 발의를 많이 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합리적인 것은 그래도 해병대가 4군 체제는 아니지만 준 4군 체제로서 주임무를 별도로 빼내는 것도, 해병대의 사기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각군의 임무’ 하지 말고 ‘군의 임무’해서 해병대를 3에 넣으면, 물론 공군은 싫어하겠지요. 왜 해병대가 3이고 우리는 4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군의 임무 정도로 수정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한기호 위원** ‘각’ 자를 뺀다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은?

○**소위원장 부승찬** 예.

○**박선원 위원** 훌륭하십니다.

○**백선희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소위원장 부승찬** 각군 하면 4군만 있는 것 같잖아요.

○**박선원 위원** ‘각’ 자를 빼면 4개가 안 되니까, 아주 탁월하십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래서 이것을 각군의 임무를 군의 임무해 갖고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이렇게 해서 3항에다 포함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임종득 위원** 2항에다 포함하라니까요?

○**소위원장 부승찬** 아니, 3항에다.

○**백선희 위원** 임 위원님, 그래도 우리 해병대를 위해서……

○**임종득 위원** 그게 위에 있는 3군 체제다라고 하는 것에 사실은 맞는 논리적인 순서예요. 3군이라고 해 놓고는 실제로는 4군 체제로 기술하는 것 자체는 아니지요.

○**백선희 위원** 아닙니다. 2조에 이미 있어요. 육해공군, 각군 이미 있어요, 2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니까 각군이라고 안 하겠습니까. 2조 2항에 해병대를 해군에 둔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 위원님께서도……

○**한기호 위원** 그런데 왜 2항 ‘가’를 못 만든다는 거야?

○**임종득 위원** ‘가’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으면 되지 뭘 ‘가’를 만들어요.

○**소위원장 부승찬**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한기호 위원** 왜 못 만든다는 거야?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논리적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법제상으로……

○소위원장 부승찬 그래서 절충안은 군의 임무, 각군의 임무 하면 4군밖에 없는 거잖아요. 각군 하면 4군이 존재하는 건데 군의 임무 하면 4군하고 관계없고 2조를 봐야 되는 거니까 그 정도에서 동의해 주시면 일단 이 2개만 가시지요.

○박선원 위원 예, 그렇시다.

○백선희 위원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임 위원님만 동의하시면……

○백선희 위원 임 위원님, 해 주십시오.

○임종득 위원 양보 많이 했는데……

○한기호 위원 못 넣는 이유가 뭐야?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항에 가지 항을 만드는 경우는 없고요. 한 위원님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니까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을 주임무로 한다’ 하고 해병대 빼 버리고 그 밑에다 가항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장비를 갖추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건데?

○백선희 위원 그런데 ‘각군’에서 ‘각’을 뺏기 때문에 그냥 군의 임무거든요. 해병대를 군으로 인정하지 못 하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박선원 위원 위원장님, 정말 지혜로운 안을 냈구만.

○한기호 위원 특별히 문제 없는데 수석전문위원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소위원장 부승찬 그렇지요. 그 안에 동의했었는데…… 그래서 방법은 ‘각’을 빼는 방법밖에 없다.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안 그러면 2항 1호, 2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1호에 해군, 2호에 해병대.

○한기호 위원 예.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2-가를 얘기해서 가지고 그랬는데 2항의 1호는 해군, 2호는 해병대.

○소위원장 부승찬 아, 그건 왜요?

○백선희 위원 그런데 그것 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게 항으로 되어 있는 것?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그러려면 2항에 예를 들면 해군과 해병대의 주임무는 다음과 같이 한다라고 하고 1호 해군, 2호 해병대 그런 식으로……

○소위원장 부승찬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이러면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각군으로 써 놓고 1, 2 이렇게 하면.

○소위원장 부승찬 해병대를 넣고 밑에 ‘가’가 들어가는 거니까……

○백선희 위원 그런데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어서……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일단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이제 됐어요, 더 이상.

수석전문위원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안 되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예, 만들어 보겠습니다. 취지를 받들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면 방금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30항까지 7건의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 50분에 속개하여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부승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법률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소위자료 2권 40쪽 34항입니다.

유용원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항목은 기존 법률상에 명시된 2020년까지의 목표연도 및 수치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군 책임운영기관 관련 규정을 다른 법인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합성을 맞추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4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보시면, 2006년도에 제정된 국방개혁법에는 여군 비율, 상비병력 규모, 간부 비율, 예비전력 규모에 대해서 2020년도까지의 목표수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의하면 2020년이 이미 경과하였고 법률에 명시된 목표는 모두 달성됐으므로 해당 목표연도라든지 수치기준을 삭제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43쪽 두 번째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개혁법에는 군 책임운영기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부분입니다.

2006년도에 제정된 국방개혁법에는 전투근무지원 분야에 한하여 책임운영기관 지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08년도에 제정된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은 이와 같은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2개의 법을 서로 맞추자는 겁니다. 군 책임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게,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업무에 대해서 군 책임운영기관을 정하도록 하는 것에 맞게 정합성을 맞추자는 취지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항목입니다. 이것은 부수적인 건데요, 44쪽입니다.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된 부칙인데요.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원래 부칙 2조에 보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고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국방개혁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검토의견의 세 번째 줄을 보시면 현재 국방부는 새 정부의 국방개혁기본계획을 올해

하반기 목표로 수립·발간할 예정이므로 시행일을 여러 가지로 고려하면 다시 한번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이 부칙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목표연도와 수치기준 삭제에 동의합니다.

군 책임운영기관 관련 규정 정비에 대해서도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종합계획 수립 부칙 관련해서도 삭제하는 방향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유용원 위원님.

○유용원 위원 발의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국방부 수정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한기호 위원님.

○한기호 위원 실제로 제가 책임운영기관을 이명박 대통령 때 육군본부 정작부장으로 서 이 안에 대해서 아주 극렬하게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왜 반대했느냐? 차관님도 군인 출신이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이 분야가 전부 보급계통, 수송계통입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한기호 위원 그러면 보급계통, 수송계통의 책임운영기관장들은 대령이거나 준장이었습니다. 맞지요?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기 전의 지휘관들은?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주로 대령이 많았습니다.

○한기호 위원 이 자리를 민간인한테 내주는 거예요, 책임운영기관이 되는 것이. 그러면 민간인한테 내줬을 때 더 효용성이 있다고 보장할 수 있느냐. 그런데 군대의 임무라는 게 어떤 자원을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창고 관리라든가 물류 관리라든가 이런 임무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 명시한 책임운영기관의 재정과 또 행정 운영에 대한 융통성을 지휘관이 가지고 운영해서 효용성을 높여라 하는 게 책임운영기관인데 군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반대했는데 당시에 이명박 정부가 그냥 밀어붙여서 이게 갔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니까 지금 세월이 얼마나 지났어요? 2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진단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사이에 군인 출신이 아닌 사람이 책임운영기관장으로 간 적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국군수도병원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것은 병원이니깐 그렇지만 나머지 수송·보급·병참 이런 데는 전혀, 한 명도 없어요.

수도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면서 현역이 운영할 때보다 분명하게 효과가 있습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해당 직책이나 유사 직종에서 근무하다가 전역한 예비역들이 하는데 어느 정도 임기도 보장되고 전문성 있게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이게 뭐냐 하면 자기가 하던 거니까 하겠지요. 그런데 결국 무슨 결론이 났느냐? 해당 병과에는 진급 자리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또 제가 대전병원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만, 병원장도…… 지금 군의관들이 대령으로

진급할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구태여 병원장을 외부에서 불러다가 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무자들한테 누누이 얘기한 게 지금 군이 자꾸 위축되고 하는데 이 특수 병과들, 지금 군수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병참·수송·병기 3개 병과를 영관장교부터는 통합해서 군수병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미국도 그렇고요. 인력 풀을 위해서. 왜냐? 진급 공석이 없으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똑같은 국가 예산이 이 사람들의 보수로 돈이 나가요. 똑같아요. 그걸 왜 바꾸느냐는 거예요.

그럼 성과를 냈냐? 이 조직 자체가 성과를 낼 수 없는 조직이에요. 보급창고를 관리한다, 보급품 관리하는데 민간인은 더 잘하고 군인은 잘못한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탄약 같은 경우는 탄약이기 때문에 민간인을 못 시켜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 번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 그냥 오세요?

이명박 대통령 때 이거 만들어 넣을 때 실제로 군에서는 다 반대했습니다, 제가 총대를 메고 반대했고. 그런데도 당시에 대통령이 국방개혁이라고 하면서 그냥 밀어붙여서 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정권이 몇 번 바뀌면서…… 왜 검토 안 하십니까?

이거는 지금 신 정부 이재명 정부도 군인한테 돌려준다고 해도 이재명 정부가 칭찬을 받을 일이지 결코 질책을 받을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번 보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살펴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방금 심사한 안건을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31항, 제32항, 제33항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부터 제39항까지 5건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차례대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5개 법안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50쪽 35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추미애 의원 대표발의 법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병영생활에서 군인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작년 11월에 소위 심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법 개정안에 대해서 훈시적·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다는 의견과 국가의 안전보장 의무를 명시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보류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군수품관리법에서도 얘기했지만 사고로 인해서 국민청원도 접수된 바가 있는 상황입니다.

51쪽 개정안 주요 내용 보시면요 현행은 법률이 아닌 훈령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이것을 법률에서 의무화하는 규정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법안입니다. 58쪽 36항입니다.

군인 복무 기본법, 백선희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법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요, 군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를 상담할 수 있도록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59쪽 보시겠습니다.

검토의견부터 보시겠습니다.

장병의 정신건강은 군 전투력 유지뿐만 아니라 인권 보장 측면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PTSD 등 정신질환을 겪는 경우 의료 지원 뿐만 아니라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통한 상담 및 심리 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정신건강 상담업무가 박스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행법상 확대 적용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다음 63쪽 이하 3개의 조항은 군 관련 법령 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위자료 6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원·이병진·위성곤 의원이 발의하신 내용 중에 군 관련 법령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과거에 위법한 명령 불복종에 관한 내용이 같이 논의되면서 이 부분도 보고가 됐었는데요. 헌법 등 군 관련 법령 교육 실시 규정을 마련하는 데 법 개정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과거에 여야 위원님들이 다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신 바가 있습니다.

65쪽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에서 현행 부분을 보시면 군인에게 전쟁법, 다문화교육, 기본권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기존의 교육 규정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여기에 더하여 헌법과 군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추가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있는 교육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인데요. 65쪽의 박스 밑에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요, 지난 두 차례의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헌법 교육의 실시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고 국방부는 이에 대해 검토의견을 낸 바도 있습니다.

그다음 66쪽입니다.

여기에서 추가된 내용은 주로 군 관련 법령 교육인데요. 계엄법, 군형법, 군사법원법 등 군 관련 법령 교육도 실시하자는 내용이고 김재원 의원, 이병진 의원, 위성곤 의원이 약간 표현을 달리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군 관련 법령으로 통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헌법 이외의 국방 관련 법령 교육 실시 규정을 내용상으로 포

함하고 현행 군인교육 규정이 있다는 전제로 그 조문 위치를 바로 그다음 혹은 그 앞으로 붙이는 방식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밑에 박스에 표현돼 있습니다.

첫 번째, 34조를 신설해서 헌법 및 국방 관련 법률 교육 의무를 신설하고 군인은 그 직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과 현재 전쟁법 준수의 의무 부분을 한 단계 밑으로, 34조의2로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35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36번, 마찬가지로 심리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37번부터 39번 법률안에 대해서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가령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한기호 위원님.

말씀을 좀 짧게,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한기호 위원 짧게 못 해요.

추미애 의원님이나 백선희 의원님이 얘기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법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서는 반대를 분명하게 합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군수품관리법,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군수품관리 훈령 여기에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 ‘사용연한, 운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른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것보다도 더 많은 항목을 가지고 불용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군용차량 탑승인원의 안전을 위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해서’, 안전띠 설치하고 착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으로 정합니까? 이런 것까지 법으로 정하면 안 맞는다는 겁니다. 법이라는 게 할 수 있는 것이 포괄적인 개념이 들어가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하고 있는 것을, 훈령급 이하에서 하는 것을 법으로 하는 건 저는 반대합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저도 한기호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하는데 너무 많은 것을 법에 다 담으면, 분명히 이점이 있는 것도 있지요. 그런데 담는 순간 여러 가지로 경직성의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

법에 담기고 나면 시행령이나 훈령 쪽에서 더 구체화되어지면서 행정 업무라든가 각종 조직, 업무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조직이 늘어나면 예산이 또 늘어나게 되고.

그런 측면에서 부작용도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김재원 의원안에 의하면 이수 여부를 가지고 진급에 영향을 미치도록 한다, 이건 너무 과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백선희 위원님.

○백선희 위원 제 부분 가지고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PTSD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요? 저는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했기 때문에 35번은 제가 발의한 내용이 아니어서요. 35번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면……

○한기호 위원 위원장님, PTSD에 관한 것도, 면담관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의료 분야거든요. 이거는 판단하는 자체가 의료 성격, 의사의 전문 정신건강 문제인데 전문상담관에 게 이거에 대한 것도 상담을 해 줘라, 물론 상담이 아니라 ‘너는 정신과 의사 진료를 받아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치료하는 성격의 것은 못 하지 않느냐. 왜 이것을 옛날에 고려를 못 했겠어요? 그래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지금 임종득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교육에 대한 것도 그냥 획일적으로 안 하면 처벌한다, 불이익을 준다 이것도 지나쳐요. 너무 그렇게 경직되게 가면 안 됩니다.

○백선희 위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부승찬 예, 백선희 위원님.

○백선희 위원 61페이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포인트는 정신건강인데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련해서는 한기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은 정신건강이어서 조금 전문적인 영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오전에도 제 기억으로는 PTSD 관련해서 장애보상금을 주자라고 하는 내용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전문가들, 병영생활전문상담관들 교육을 국방부에서 시키도록 했고 그래서 일부 병영생활상담관은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대해서 인지는 당연히 누구든지 되어 있어야 하고요. 조금 더 전문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정신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넣은 이유는 PTSD를 매우 강조하기보다는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미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전문상담관이 하는 내용에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과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고 국방부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상담관에서는 그와 관련된 정신건강 부분이 없습니다.

앞부분에 신체 질환과 관련된 것은 있습니다. 4번과 같은 것이 신체적 건강과 관련된 것인데 그 못지않게 정신건강이 중요하고 이것은 적응 문제, 우울증 문제, 자살예방 문제, 많은 부분 포괄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만큼 또 국가에서도 정신건강에 대한 계획 수립과 실천이 강화되는 만큼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장병들이 건강한 정신으로 병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부승찬 예,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백선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관련해서 제가 조금 보강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PTSD 치료는 정신과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데 우리 야전의 척박한 현실이 예약해서 정신과 의사의 진료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쉽게 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좀 더 가까이에서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직무 범위에 포함시켜 주면 거기서 1차 어느 정도 한 번 걸러질 수 있어서 더 심해지거나 자살로 이르게 되는 것을 차단해 줄 수 있다는 굉장히 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여져서 동의를 했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교육이나 이런 것 수료하면 진급에 영향을 미치도록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66쪽에 보면 전문위원 수정안이 있고 제가 수석전문위원 수정안에 동의한다고 했는데, 김재원 의원님 안에 들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빠지고 러프한 부분들은 좀 간결하게 정리가 된 수석전문위원 검토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유용원 위원님.

○유용원 위원 백선희 위원님 법안에 저도 기본적으로 취지에 공감하고 차관님 말씀 잘 들었는데 좀 걱정되는 부분이 제가 알기로 전문상담관이 굉장히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5명 중의 1명이, 이 사람들이 이제 PTSD에 시달리고 그다음에 근무지가 자주 바뀌어서 고용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추가적으로 업무가 이렇게 부여가 된다면? 가뜩이나 업무가 과중한데.

○국방부차관 이두희 현실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병사 입장에서 뭔가 안 좋다는 겁니다, 상담관님과 상담하고 싶다. 상담을 해 보면 넌 우울증이겠다, 넌 조울증이겠다, PTSD의 성격이 있는 것 같다, 상담을 더 해 보고 너는 전문적인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되겠다 하고 보내 주는 겁니다.

현상은 별 차이가 없는데 전문상담관의 업무 영역 범위 내에 이게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 차이 정도 있다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전의 현실을 보면.

○유용원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분들 현실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시행하게 된다면 실효성 있는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5번 추미애 의원님 법안 관련해서 보면, 이 법안 제4조(국가의 책무) 항목에 보면 이미 국가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17조에 의료권 보장, 17조의2 미세먼지에 따른 외부활동 제한, 17조의3 폭염·한파 등에 따른 조치, 18조의2 생활여건 보장 등을 통해서 기본권을 이미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조의4는 기존 조항을 포괄하는 중복 입법의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차관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위원님 말씀에 공감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만큼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의 입장에서는 안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생명을 잃었던 사례들도 많이 있고 생명과 관계되는 부분은 조밀하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는 취지로 저는 이해하고 동의를 했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제가 한 가지 여쭙볼게요.

35항 보면 개정안 내용을 신설해서 제17조의4만 포함시키면 되지 않나요? 안전띠 착용이라든지 이런 디테일한 것들은 훈령이나 지침에 반영되고, 아까도 군수품관리법상의 대안으로 저희가 제시를 했잖아요. 안전과 관련된 조치를 강화하는 조문만 포함하면, 세부사항은 좀 빠더라도, 그거는 하위법령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약간 뭐랄까, 거시적으로 안전조치 강화는 필요하다. 이거 청원도 올라와 있잖아요. 부모님들의 애타는 마음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히 그냥 하는 것보다는 아까 군수품관리법에도 장관이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는 조문을 넣었듯이 개정안 17조의 4 부분만 그냥 가면 되지 않을까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기호 위원 아까 20항 논의할 때 거기에 국방부장관은 안전에 대한 조치를 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안 넣어도 된다 이거예요. 그걸 여기다 넣고 저기다 넣고 계속 넣어서……

부모님들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면 국방부에서 안 하느냐? 훈령으로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꾸 법으로 넣자고 하는 게 안 맞는다는 거지.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니까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제17조의4(안전권의 보장) 이거는 넣어도 관계는 없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한기호 위원 관계없다고 그냥 넣습니까? 그렇게 위원장님은……

○소위원장 부승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된다’, 기본법이잖아요, 기본법. 베이직 로(basic law)니까, 이거는 바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법하고……

○한기호 위원 20항 검토할 때 군수품관리법에도 이미 넣었잖아요.

○소위원장 부승찬 그거는 군수품 관리와 관련된 거고 이거는 안전조치와 관련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니까, 이 부분은 저는 중복이라는 표현보다는 기본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한기호 위원 기본법에 어떻게 넣겠다는 겁니까?

○소위원장 부승찬 제17조의4, 신설 내용만.

○한기호 위원 사실 불필요한 문구를 자꾸 넣는 게 가시고기 되는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부승찬 기본법이잖아요.

○한기호 위원 위원장님, 군 생활 해 봐서 아시겠지만 가시고기 만드는 거예요.

○소위원장 부승찬 아니, 가시고기 아니예요. 기본법인데……

○한기호 위원 안 넣어도 될 걸 뭐하러 자꾸 넣어요?

○소위원장 부승찬 기본법이니까 넣어야지요. 기본이 되는 법이잖아요.

○한기호 위원 참, 정말…… 이 기본법을 만들 때 저하고 안규백 의원하고 들어서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도 많은 것들을 넣고 빼면서 했는데 이거는 기본법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것만 넣자 이렇게 합의를 봐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꾸 이렇게 넣으면…… 제17조의4(안전권의 보장) 이거는 다 하고 있다는 거지.

○소위원장 부승찬 기본법은 선언적 의미도 있어요. 이거를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아까는 군수품 관리에 대한 거였고 이거는 안전권이잖아요. 군인의 안전권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는 거지요.

○한기호 위원 그러면 보세요.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17조의4의 내용 ‘국가는

병영생활에서 군인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하고 여기 개정안을 요구한 건 전혀 달라요. 13조의3에 '국방관서의 장과 각군 참모총장은 군수품인 차량'에 대해서만 한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위원님, 53쪽에 있는 이 개정안은 참고로 추미애 의원이 군수품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이렇게 냈다는 걸 비교한 거예요, 같은 취지로.

○소위원장 부승찬 그거는 포함 안 됩니다.

○한기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이 완전 다른 내용이라니까. 임의로 바뀌도 이렇게 까지 바뀌서 할 수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이 내용을 내신 게 아니거든요.

○소위원장 부승찬 이 내용은 낸 게 아닙니다. 참고사항으로 넣은 겁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군인복무기본법을 내신 게 아니고 참고로, 유사한 취지로 낸 적이 있다는 것을 보여 드린 겁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백선희 위원님.

○백선희 위원 참고사항이 들어가 있어서 저도 조금 헷갈렸습니다.

일단 아까 차관님께서 정신건강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청소년·청년 건강 중에 제일, 신체건강보다 오히려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서 그렇고요.

그리고 저도 참고사항 때문에 좀 헷갈렸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인데, 저도 법에 많이 들어가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이 17조가 들어가야 되는 3장이 군인의 기본권으로 기본적 권리에 관련돼 있는 거거든요. 기본적 권리인데 제가 보기에 권리가 너무 부족합니다, 여기 들어가는 게. 17조에 의료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고 여기 보면 생명·안전권이거든요. 그런데 생명·안전권이라고 하는 거는 군인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국민의 가장 일차적인 권리가 생명권·안전권에 해당이 됩니다. 생명 및 신체 안전권이기 때문에 우리 군인들의 기본적 권리를 국방부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이 부분을 넣어 주는 것이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같이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소위원장 부승찬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백선희 위원님 주장에 공감을 합니다. 제가 41조를 죽 들여다보니까 41조 1항 4호에 보면 질병·질환 및 건강 악화 등 신체에 관한 사항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체에 관한 사항이 과연 정신건강 이상을 포괄하느냐를 봤을 때 포괄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6호로 해 가지고 그걸 집어 넣은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을 신체에 관한 사항, 정신건강에 관한 사항 이렇게 붙여 가지고 하면 완전성도 기할 것 같아요. 위치만 이렇게 올리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백선희 위원 위치 변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종득 위원 4호에 보면 신체에 관한 사항이 있잖아요.

○백선희 위원 4호에다가 신체건강과 그리고 정신건강을 또 넣자라고 하는 말씀이신가요?

○임종득 위원 그 바로 밑에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을 그대로 집어 넣으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의 완전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괜찮을 것 같네요.

○백선희 위원 한 번만 더…… 죄송합니다. 정리해서 어떻게 하시자라는 말씀이신지……

○소위원장 부승찬 다시 설명해 주세요.

○임종득 위원 다시 설명을 해 드릴까요?

41조 4호 보셨습니까? 거기에 질병·질환 및 건강 악화 등 신체에 관한 사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6호에 그걸 넣자 그랬단 말이에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에 관한 사항 이렇게 했는데 위치를 5호로 올려서 4호 밑에 놓으면 신체건강과 정신건강까지 커버가 되니까 위치만 바꾸면 괜찮겠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백선희 위원 저는 동의합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신체건강, 정신건강, 호를 바꾸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4호는 질병, 5호가 정신건강, 6호가 장기복무 및 군인가족 이렇게 순서대로 바꾸자라고……

○소위원장 부승찬 41조에 포함을 하자는 거지요?

○백선희 위원 예, 순서를 바꾸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임종득 위원 41조 6호를 5호로 올리자. 그래야지 분류 자체에서 보는 순간 완성도가……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 정신건강에 관한 사항을 신체에 관한 사항 바로 밑 5호에 넣는 걸로.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4호의2’라는 형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5를 기존 그대로 두고요 위치만 4하고 5 사이에……

○백선희 위원 위치만 변경, 4하고 5 사이에 넣자라고 하는……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이거는 4호의2가 가능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이거는 가능해요?

○백선희 위원 위치 변경입니다.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임종득 위원 이거는 가능하지. 왜냐면 저거는 4군 체제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백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님.

○소위원장 부승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헌법과 군사법령에 관한 교육에 처벌조항을 삭제하는 그거는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한다 말씀이시지요?

○임종득 위원 예.

○소위원장 부승찬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임종득 위원 처벌하면 안 돼요, 진짜.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면 처벌조항을 빼고 진급에 뭐 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김재원 의원안같이. 진급 요건에 반영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삭제를 하고 의무조항으로 넣으면 되지 않냐 이 말씀인 거지요, 임종득 위원님.

한기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

○한기호 위원 제가 군 생활 하면서 뭘 느꼈냐면 교육하라는 게 얼마나 많은지 다 교육하기가 힘들 정도로 많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 교육할 사람도, 교육할 교관도 없어요.

그러면 봅시다. 차관님, 우리가 의무적으로 군에서 교육 하라고 한 것, 성평등에 대한 것부터 성에 관련된 것 교육하라고 되어 있지요. 그다음에 인권에 대한 것 교육하라고 돼 있지요. 법에 대한 교육하라고 돼 있지요. 교육하도록 되어 있는 것들의 목록을 다 한번 뽑아 보세요. 뽑아서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저는 이거 반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처벌만은 안 된다고 하지만 이렇게 놓고 실제 가용시간을 정신교육의 날만 찾아 가지고 훈련 다 빼고 대입시켜 보세요, 다른 교육 할 수 있는가. 못해요. 지금 그렇게 많습시다, 교육하라는 게. 의원님들은 선의로 넣는 것이지만 사실 예하부대에는 엄청난 부담을 주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를 넣음으로써. 그래서 의원들이 입법 발의했다고 선의라고 다 받아 준다면 결국은 부하만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안전 문제도 여기 52쪽에 국방부 안전훈령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법에다 또 넣자. 뭐 하러 옥상옥을 자꾸 만드냐는 거예요, 안 만들어도 될 것을.

저는 그래서 법을 만드는 것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예하부대 입장에서는 전부 부담이 되니까 그걸 국방부에서 걸러 줘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예하부대 가서 보세요. 정신교육 하는 거 누가 합니까? 중대에서 하지요? 중대에서 하는데 성교육 교관 누가 합니까? 법 교육은 또 누가 합니까? 다 누가 해요? 안전교육은 누가 하고…… 할 사람이 없어요. 교안이 있어야 하지요. 그래서 자꾸 교육하는 거에 대해서 법을 많이 만드는 게 좋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법에 의무교육으로 하도록 돼 있는 것 한번 뽑아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한기호 위원 그리고 안전과 관련된 거는, 제가 이게 필요없다는 게 아니고 구태여 법을 만들지 말자 이거예요, 훈령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예, 의무교육 하는 것들 정리해서 한기호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대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방금 심사한 안전을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부터 제39항까지 5건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기호 위원 어느 것을 죽이고 어느 것을 살리는 건지……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35항 안전권 보장 부분은 합의가 안 되신……

○한기호 위원 안 넣는 거지?

○소위원장 부승찬 그거만 넣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것……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지금 약간 의견이 다르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부승찬 아까 한기호 위원님……

○한기호 위원 그냥 막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소위원장 부승찬 아니요, 아니요. 한기호 위원님 군수품 그거는 거기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한기호 위원 자꾸 넣지 좀 마세요.

○소위원장 부승찬 안 넣었어요.

○한기호 위원 힘들게 하지 마세요, 군인들.

○소위원장 부승찬 다음 의사일정 제40항 한국청소년사관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자료 74쪽입니다.

한국청소년사관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안입니다. 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이시고요.

주요 내용 보시면 주니어 ROTC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국청소년사관연맹에 대한 국가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하는 것입니다. 국가 지원의 내용은 경비보조, 국공유재산 무상사용, 조세 감면 등이 있습니다.

75쪽 이하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안 총괄 검토 부분입니다.

제정안은 주니어 ROTC 프로그램이 미래세대를 건전한 국가관과 책임의식을 갖춘 인재로 육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 프로그램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부여함으로써 국방 분야 관련 인력 양성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려는 입법 취지로 보입니다.

청소년단체에 대한 보조 및 금전 출연·기부 관련 입법례로는 현재 네 가지가 있습니다. 1969년에 만들어진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1981년에 만들어진 한국청소년연맹 육성법 그리고 84년에 만들어진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법 그리고 2015년에 만들어진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법이 있습니다. 여기 각각의 조문들을 보시면 전체적인 흐름은 비슷한 느낌이고요. 이 법과 다른 법의 차이는 2조에 협조 및 지원으로 돼 있는데 국가의 책무처럼 돼 있는 것이 조금 다른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총괄적인 보고를 이렇게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하게 되면 조문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이게 제정법안이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제정법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면 사실 이것을 여기서 위원님들이 숙지한다는 게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은 공청회를 해야 되니까 공청회 이후에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가시지요.

○한기호 위원 제가 참고로 좀……

○소위원장 부승찬 한기호 위원님.

○한기호 위원 죄송합니다. 시간 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두 번째 나온 한국청소년연맹 총재를 6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명예총재입니다. 이게 법에 되어 있지

만 실제로 법에 대한 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게, 우선 제3조(보조 등)에 대한 것은 지금 보조를 국가로부터 받지 못합니다. 스카우트, 한국청소년연맹, 해양연맹 전부 다 못 받습니다. 지금 스카우트는 전 세계적인 스카우트 활동할 때 그때 행사에 대한 지원만 받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국유시설에 대한 이용도 못 합니다. 지금 실제로 서울시 재산에 임대료를 내고 들어가 있습니다. 이 법을 가지고 몇 번, 10년 이상을 했는데도 안 해 줍니다. 그다음에 조세 감면도 못 받습니다. 세금 다 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법이 사문화돼 있는데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것을 만든다는 게, 사실 안 지켜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근거로 만든다, 이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한국청소년연맹 육성법을 한번 갖다 놓고 보십시오. 거기에 지원해 주도록 많은 부분이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근거로 또 청소년 ROTC를 만든다? 제가 봐서는 이게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또 하겠다는 것인데 법률을 없애지 않고 있어서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선원 위원 저는 반대하기 때문에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것은 문화체육부나 이런 데로 해 가지고 청소년들 이렇게 올라와야지 국방위에서 이렇게 하면 이 법안이 되겠어요? 안 되지요. 교육부나 다른 데서 하면 되지 이것을 왜 국방위에…… 주니어 ROTC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히틀러유겐트 만들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MZ세대가 이런 것 하겠어요?

○한기호 위원 지금 기관들을 어디서 통제하냐면 여가부에서 합니다.

○박선원 위원 그러니까요.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면 여가부 법이에요?

○임종득 위원 부별로 하는 데가 있어요. 컨트롤하는 기관이 법에 따라서……

○한기호 위원 여기 항공우주 이것은 해수부, 그다음에 과학우주청소년 이것은 과기부 이렇게 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청소년연맹은?

○한기호 위원 그다음에 스카우트하고 한국청소년은 여가부. 그래서 부는 국방부로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어느 부도…… 지금 다른 청소년단체가 다 위기에 와 있습니다. 전 세계 스카우트연맹은 거의 해체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젊은 애들이 스카우트에 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한 안건을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한국청소년사관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1항 한국유격군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소위 자료 90쪽입니다.

41항 한국유격군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한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제정안입니다. 그전에 두 차례에 걸쳐 소위 심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요, 한국유격군기념사업회를 설립하는 내용이고 유격군 기념관 및 기념탑을 건립·운영하고 전시·조사·연구들을 하는 내용입니다.

소위 심사 결과로 예우 필요성의 취지는 동의하나 기념사업의 성격 고려 시 국가보훈부가 담당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주로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일 마지막 부분 보시면 기념관 설립 예산 소요가 많다면 단체 및 예우 차원에서 기념비, 명비만이라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91쪽 이하 총괄 검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요, 유격군기념사업회의 설립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의 합당한 예우와 충분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다만 현재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른 기념사업회에서도 기념탑의 건립·운영 등을 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 주셨는데 공감이가 저희 국방부에서는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임종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종득 위원 이게 처음 논의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지난번에도 논의가 돼 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멘트했던 부분은, 한기호 위원님이 제시한 법안 취지에는 아마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취지에는 공감하는데 우리 사안 아니다 하고 던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보훈부에서는 보훈부대로 또 적극적으로 안 합니다. 기재부에서는 돈 들어가니까 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계속 밀려오는 것인데, 이 한국유격군이 세가 약하다 보니까 아무런 기념사업 같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차관님한테 질문을 좀 해 볼게요.

한국유격군의 정의가 뭐니까? 지금 국방부에서는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한국유격군은 법과 시행령 그리고 위원회가 인정한 여러 조항들이 있는데 여기 94페이지에 보시면 6개 부대로 대상은 약 2만 1600여 명으로……

○임종득 위원 지금 2만 1600여 명이라고 하지만 살아 계신 분이 몇 명 될 것 같아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지금 참전용사 중에 생존하신 분은 90대 중반이시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임종득 위원 지금 이것을 주장하면서 하기가 되게 어려운 가운데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형평성 차원에서 소외된다고 느끼는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닐 것 같은데 지금 요구하고 있는, 여기 법에 담아서 기준으로 잡고 그것을 지자체하고 보훈부나 국방부가 함께 한다면 의미 있는 기념사업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서로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하고 있고 주체자들은 자기들이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주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 서운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전향적으로 해서 이 부분들을 어떤 형태든지 담아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한기호 위원님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한기호 위원 제가 설명을 해야겠지요, 제가 이 업무를 국회의원이 돼서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유격군이 처음에는 보상조차 못 받았어요. 이분들은 과거에 법을 만들 때, 북파공작원부터 만들 때 뭘 만들었냐면 ‘한국군 소속으로’ 이렇게 명시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때 한국의 6.25전쟁 하고 있는 미군에 소속돼서 하든가 또 별도의 운용을 해서 사실은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2만여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 준다고 얘기해서 제가 법을 여러 번 발의해 가지고 결국은 마지막에 기재부하고 절충한 것이 보상 개념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 기리는 개념으로 최대한 해 준 게 1000만 원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고 계시는데 이분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단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디에 문의하고 이런 것을 해 볼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실제로는 여기 회장님이 사비를 들여서 사무실 하나 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나이가 이미 94세인가 돼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것에 대한 1000만 원 보상 받는 것도 누가 대답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국방부의 누가 얘기를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사무실 하나 얻고 직원 한두 명 쓸 수 있도록 이것만 해 달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찾아오면 제가 지금도 모시고 항상 만나 뵙고 다 하지요.

그런데 이것을 국방부가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대단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953년도에 스무 살이었으면 지금 생존하신 분 중에 90세 이하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제일 젊은 사람이 93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보상 대상인지 아닌지 물어보려고 해도 대답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전화라도 하나 개설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도 덧붙여서 우리도 2만 명 이상이 참전해서 많이 죽고 했으니 그래도 탑이라도 하나 세워 달라 이겁니다. 이게 뭐가 복잡해요? 안 된다고만 계속 그럴 수 있어요? 차관님, 차관님도 군인 출신인데 그럴 수 있어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맞습니다. 저도 정서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백 번 천 번 공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6·25 때 헌신하신 우리 선배님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알고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과 법 절차를 시행하는 측면에 있어서 저희가 감성이나 정서만으로 할 수 없다는 그런 좀 어려운 부분을 저도 보는 과정에서 발견을 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18대 때는 그분들이 찾아오셨지만 제가 이 법을 발의를 못 했어요. 19대 때 발의하고 21대 발의하고 22대 지금 세 번째 발의한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다 돌아가시고 몇 분 남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보상받는 액수가 크지도 않아요. 제가 아무리 해도 안 돼서 그 당시에 1000만 원으로 정부하고 합의한 겁니다. 그런데 그

것도 지금 찾아가는데 물어볼 데도 없으니까 사무실 내고 전화기라도 하나 놓을 수 있도록 해 달라, 이게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못 해 줘요? 이 사람들이 국방부에 어디다가 물어봐요?

이분들은 당신들이 해 왔기 때문에 ‘넌 돼, 안 돼. 그리고 이건 이렇게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분들이거든요. 그것을 못 해 주겠다? 그러면 국방부 뭐하러 있어요.

제가 화가 나는 게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19대 21대 22대 이렇게 세 번을 했는데 끝까지 국방부는 못 해 준다는 거야, 초지일관. 장관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고 차관이 바뀌어도 못 해 주겠다. 왜? 실무자들이 한 번 거절한 것이기 때문에 초지일관 같이 가는 거예요. 여기 실무하는 사람들, 당신들은 늙지 않고 당신들은 죽지 않고 그냥 사는가? 세상이 그렇게 변하는데, 차관님이 대답하는 게 차관이 가진 대답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국방부가 한 번 한 것을 19대 때부터 지금 초지일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얘기를 합니까! 사람도 아니지!

○소위원장 부승찬 박선원 위원님.

○박선원 위원 한기호 위원님께서 한국전 참전용사 말씀하셨는데요. 다 그럴 겁니다. 저도 31년생 선친이 한국전 참전하셔서 가지고 국가유공자로 돼 있는데, 90페이지에 보면 ‘단체 및 예우 차원의 기념비·명비까지만이라도 만들어 줄 필요’ 이렇게까지 하는데 전쟁기념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보훈처가 생각보다 우리 한국전 참전용사나 월남전 참전용사 잘 챙기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예산 이야기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전쟁기념사업, 전쟁기념관 운영하는 쪽에서 한 얼마만 투입해도 이분들 예우도 하고 그다음에 전사에 이분들이 활동하신 것 올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차관님 저하고 비슷한 나이 또래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전우’라고 금요일 저녁에 한국전 때 싸웠던 유격대 용사들 이야기 많이 있잖아요, 켈로부대도 있고. 그것 보면서 큰 세대로서 보면 기념사업회를 거창하게는 못 해 드려도 뭐라도 전쟁기념관이든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해서 그분들 모시고 구순잔치도 해 드리고 하세요.

그걸 자꾸 법이니까 못 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해 드리면, 이분들이 꼭 법까지 요청하시겠어요, 내일모레 100살 되고 몇 분 남지도 않으셨는데? 방법을 찾으시면 있을 것 같아요, 차관님.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이건 위원님 말씀처럼 법률 안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선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왜 보훈부가 정무위에 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는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협의를 하고 뭘 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딱 이 문구만 보면 이거 보훈부 관할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국방부는 현역 위주로 가는 거고 외적인 부분, 물론 전쟁기념사업회가 있습니다마는 외적으로는 보훈부에서 만들어서 진짜 참전용사들에 대한 예우, 보상,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정신 이런 것을 보여 준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협의체조차 없어요.

이것은 국방부를 질타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국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보훈부가 왜 정무위에 가서 금융자산 속에 섞여 가지고 주가 누르기 방지법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런 데에…… 거기 끼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박선원 위원 위원장님,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방위가 뭘 해서 공동의 안을 만들어서 기자회견을 하든 뭘 하든 해서 상임위를…… 원래 보훈부는 국방위 쪽으로 와야 연계가 되는데 전혀 연계가 안 되고 여기서 통과돼도 보훈부 가면 또 고꾸라지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걸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2대 하반기에는 반드시 보훈부가 우리 국방위로 오는 게 맞습니다.

○박선원 위원 맞아요.

○임종득 위원 의사진행발언……

○소위원장 부승찬 예,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위원장님 바른 소리 하신 것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군인들은 군에 입대해서 전역하고 그 이후까지가 원 사이클로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 국가의 주체는 결국은 국방부여야 하거든요. 그런데 국방부가 너무 크다 보니까 사실은 전역 후에 관련되는 부분이나 보훈에 관련되는 것을 별도로 떼 가지고 지금 보훈부가 만들어진 겁니다. 처로 있다가 부로 승격이 됐는데.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똑같이 군에 복무하고 헌신했던 사람을 관리하는데 2개 부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군에 입대해서부터 제대하고 난 다음 사후관리까지 연계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취증하는 문제도 그렇고 선양하는 문제도 그렇고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하반기 시작할 때 보훈부를 국방위원회에 반드시 포함시킬 수 있도록 우리도 같이 기자회견하는 데 참여할 테니까 여당에서 힘을 좀 써 주십시오.

○소위원장 부승찬 국회법 소관상임위에 국가보훈과 관련된 것은 정무위 소속으로 둔다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일차적으로 국회법 개정 발의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개정 발의하면서 기자회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이걸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박선원 위원 그건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내일 국방위 전체회의 있잖아요. 그런데 내일 장관님이 나오실지 차관님이 나오실지 아직 모르겠는데 방법을 찾아보세요. 95세 드신 분들이 단체기념비, 명비 하나 넣고 전쟁기념관에 뭐라도 하고 전쟁기념사업회에서 뭐라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와 가지고 장관님이 이분들 한번 모셔서 보신다든지, 차관님이 한번 위로를 해 주신다든지 뭔가 내일 방안을 찾아 오세요. 그렇게 하고 법 이야기를 또 하자고요.

○유용원 위원 첨언해서 한마디만.

○소위원장 부승찬 예, 유용원 위원님.

○유용원 위원 저도 첨언해서 한마디만 올리면, 아시겠지만 유격대는 저도 기자 시절에 이분들 대상으로 취재해 본 적이 있는데 국방부에서 이미 참전용사에 대한 처우라든지 이런 법률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이분들은 그분들하고 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동안 존재 자체도 인정이 안 돼서 더 소외돼 있었고 대우도 못 받았고 또 훨씬 큰 리스크를 안고 싸우셨던 분들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국방부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기호 위원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이게 자꾸 예산 문제가 이슈가 된다면 예를 들어 6조에 유격군기념관 같은 경우가 돈이 많이 들 사항 같은데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라도 우선 통과시켜서 예우를 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어떨까 하는데 지금 한 위원장님이 안 계셔서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좋은 의견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한 안건을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한국유격군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2항 및 제43항, 2건의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소위 자료 2권의 116쪽입니다.

2건의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있습니다. 박균택 의원안이 있고 서삼석 의원안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박균택 의원안은 종전부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많이 돼 있습니다.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에 대해서 구체화한다든지 종전부지 개발 절차 간소화를 위해 인허가 의제를 정비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돼 있고요.

서삼석 의원안 같은 경우에 이전지역을 중심으로,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특례사업이라든지 이전주변지역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의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을 한다든지 이전주변지역 소음피해에 대한 추가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규정에 있습니다.

117쪽의 총괄 검토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및 정부부처 의견입니다.

현재 군 공항 이전 관련 현행 법령 체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3년에 제정이 됐고요. 기본적인 방식으로 기부 대 양여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종전부지 가액과 이전사업비의 차액을 주변지역 지원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년 뒤인 2023년 4월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만들어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해서 모든 군 공항 이전사업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주요 검토 사항입니다.

작년, 2025년 1월에 대구공항법에서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추후 보완하여 사업의 안정적·효율적 추진을 도모했고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도 이 법 개정안을 통해서 대구법에 맞추려고 하는 내용과 좀 더 많은 지원의 내용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에는 군 공항 이전사업이라는 유사성을 근거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동일한 내용 그리고 유사한 내용 그리고 이전사업의 보다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새롭게 추가한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재돼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유사입법체인 대구공항법과의 정합성·형평성 그리고 대상이 각각 군 공항과 민·군 통합공항이라는 점에서 두 사업을 완전히 동일시 볼 수 없는 점 그리고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대한 국가재정 의무적 투입의 적절성 그리고 예타라든지 부담금,

투자 심사 등 면제에 대한 소관부처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118페이지 보시면요, 최근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의결되면서 한 조항으로 광주 군 공항 이전에 관한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 하나가 통합특별시는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전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 보조할 수 있고 통합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단 지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19쪽에는 참고자료로 전체 열몇 개 조항 중에서 대구공항법과 동일한 내용은 5개 있고, 유사한 내용이지만 약간 추가된 내용이 3개 정도 있고, 그다음에 대구공항법에는 없지만 여기만 들어 있는 내용들이 120쪽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일단 총괄적인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먼저 이게 굉장히 양이 많고 복잡한데 기본적으로 119페이지와 120페이지를 기본으로 해서 개략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고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또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먼저 119페이지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과 동일 내용 규정에서 가, 나, 다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라, 마 관련해서 주요 내용에 보시면 박균택 의원님 안에 ‘보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조라는 것은 국가재정을 투입한다는 것입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이 아니라 재정을 투입한다는 의미이고, 예타 면제 관련해서도 사안에 따라서는 반드시 면제를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2건은 부동의로 저희가 판단을 했고……

○소위원장 부승찬 차관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들 의견 들어 보시고, 이걸 다 하고 하면 또 하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조문별로 부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일단 우선적으로 국가 이전사업 비용 보조와 관련해서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이 항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때 형평성을 가장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군부대 이전과 관련되는 기부 대 양여가 기본으로 죽 되어 오는 과정에 있고 대구공항도 다 그 바탕하에서 이루어졌던 건데 지금 광주공항 이전과 관련돼 가지고 정부에서 지원하고 융자, 보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들이 바뀌어지면 거기에 합당한 이유와 논리가 있어야 되고 다른 데도 다 적용이 돼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 하는 부분들도 기본적으로 예타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투자 대 아웃풋을 놓고 봤을 때 경제성과 효과성들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데는 그것을 안 하는데 거기만 하는 것으로 집어넣는 것 자체가 동의를 받기 어렵고 일관성 자체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구공항 이전과 관련된 법과 광주공항 이전과 관련된 법을 같이 등치해 가지고 형평성을 봐야 된다는

것이 있고.

지금 통합 특별법 해 가지고 광주·전남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이게 또 다루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들이 어떤 한 지역에만 국한돼 가지고 하는 것은 동의를 얻어 내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혹시 다른 의견,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차관 이두희 한 가지 정정 설명드리겠습니다.

예타 면제는, 원래 예타가 이루어지는 것은 국가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타를 하는데 재정이 들어가지 않고 기부 대 양여로 할 경우에는 정부에서 예타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임종득 위원 그게 지금 돈을 달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그렇습니다. 돈도 주고, 예타도 하는데 면제해 달라……

○임종득 위원 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예타를 해야 되는데 예타 자체를 면제해 달라 그러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소위원장 부승찬 대구공항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래 전에 법이 통과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척이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전혀. 그래서 국가가 보조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시키고 있는 것 아니에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대구공항은 거의 다 합의가 됐고 마지막에 재정 부분만 합의가 안 돼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시대 상황의 변화 때문에 사업성이 점점 낮아지다 보니까 공자기금 용자로 했을 때 금융 비용, 배보다 배꼽이 커진다고, 이게 보니까 금융 비용이 너무 커져서 금융 비용에 대한 용자나 지원 이런 부분 관련해서 재정부와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소위원장 부승찬 광주공항 군 공항 이전 사업도 그 방식으로 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통령님께서 타운홀미팅 때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그 표현을 쓰시고 그리고 6자 협의체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TF?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리고 국방부장관도 서명하신 거 아니에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소위원장 부승찬 그런 상황에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사실 사업자, 대구공항도 마찬가지고요 광주공항도 마찬가지인데 달려드는 사업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임종득 위원님 말씀처럼 그나마 광주 군 공항 이전은 통합법이 있어 갖고 예를 들어서 20조를 넣는다면 일정 부분 재정 지원이 가능하게끔 융통성 있게 법을 만들어 왔어요. 그렇지요, 아까 말씀하신 거.

○임종득 위원 그러니까 사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사타를 폐지하자는 얘기가……

○국방부차관 이두희 지금 6자 협의회를 하면서 대화가 많이 이루어졌고 거기도 마찬가지, 광주 군 공항 특별법도 대부분 뒤에 부동의…… 부동의가 보면 재정을 투입해야 되는 문제고 기부 대 양여의 원칙이 허물어지는 부분인데 6자 협의회를 통해서 조금 보강이 된 것이 이전지역에 1조 플러스 알파를 지원할 수 있는 게 합의가 이루어졌고 또

몇 가지 면제조항을 부여했는데 그게 ‘바’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면제조항도 일부 있는데 이거는 대구 특별법에는 없고 광주 특별법에는 들어갔는데 정부의 입장은 광주 특별법 이걸 받고 추후에 대구 특별법 또 대구공항 특별법도 이 사안을 개정해 주자 그런 안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기부 대 양여라는 근간은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보장적으로 한다는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사업비가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국가가 보조를 하면 결국은 사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지금도 초과사업비는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현재 법령에도.

○소위원장 부승찬 법령에 그렇게 돼 있어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지방정부에서는 ‘해야 한다’로, 의무조항으로 해달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도덕적 해이라든지 사업비의 폭발적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은 저희가 받기는 어렵고……

○소위원장 부승찬 차관님, 뒤에 답변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마이크를 들고 하시는 게……

○국방부차관 이두희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이……

○국방부군공항이전사업단장 박승홍 군공항이전사업단장 박승홍 국장입니다.

차관님 말씀하셨듯이 광주공항하고 군 공항…… 기본적 개념은 대구공항은 민간공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융자 플러스 보조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광주공항은 순수하게 군 공항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박군택 의원님이 제기한 보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보조를 한다는 것은 결국 국가예산이 투입되면 사업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기부 대 양여의 근본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법안에 대한 기본 맥락이고.

두 번째, 초과사업비와 관련해서는 금융 비용을 포함해서 사업이 완결되는 시점까지는 사후에 보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임의조항 수준에서 사후에 도덕적 해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의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국가가 보전을 해주겠다라는 것인데 지금 박군택 의원님은 의무조항으로 무조건 초과사업비까지 해 달라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의 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면 기부 대 양여 하고 사업비가 초과되면 예를 들어서 국가가 보조한다고 치면 기부 대 양여 원칙이 깨져요, 아예?

○국방부군공항이전사업단장 박승홍 아닙니다. 그래서 도덕적 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사업비가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그 정도는 예외적으로 수용하는 쪽으로……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면 그 조항이 어디에 있어요? 몇 조 몇 항이에요?

○국방부군공항이전사업단장 박승홍 위원님, 제가 지금 그 조문을 안 가지고 있는데……

○소위원장 부승찬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찌 됐든 논쟁만 될 거고, 정부 입장에서는 확고한 거잖아요?

○국방부군공항이전사업단장 박승홍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결론은 확고하기 때문에, 어찌 됐든 대통령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6자 협의체가 꾸려졌고 꾸려진 상태에서 국방부장관도 서명을 하신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부 대 양여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해 버리면 결국 군 공항 이전은 사실상 물 건너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진척이 될 거로 보세요?

대구공항도 민간공항이 들어간다고 하는데도 안 되는데, 이게 기부 대 양여지만 정부 사업인데, 군 공항이잖아요. 그렇지요?

○국방부군공항이전사업단장 박승흥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런데 군 공항에 대해서 정부의 어떤 지원이나 보조, 확답이 없으면 이게 갈 수 있냐 이거지.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아닐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정확하게……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법에서, 이 정도까지는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다 정도의 안을 한번 갖고 와 보는 것도, 그냥 원천 봉쇄하지 마시고 이 정도까지는 정부가 할 수 있다 정도는 박근혜 의원이나 서삼석 의원이나 혹은 추후에 논의될 때 국방부안을 보고를 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여기서 이 조문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난 여기에 부동의해, 여기서 끝내’ 이게 아니라 어느 선까지는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그 선을 조문에 넣으면 되잖아요, 법 조항에. 안 되나요?

○국방부군공항이전사업단장 박승흥 그것이 25년도 1월에 대구특별법을 개정할 때 정부가 설계했던 부분입니다. 원래는 기부 대 양여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지만 최소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통 이전사업이 10년 정도 추진이 됩니다. 10년 안에 사업비라는 것이 예측할 수 없는 여러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예기치 않은 요소 정도는, 기부 대 양여의 기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초과사업비 정도는 국가가 재정을 부담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정부 차원에서 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위원장 부승찬 그게 몇 조 몇 항이에요?

○국방부군공항이전사업단장 박승흥 제6조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6조 3항?

○국방부군공항이전사업단장 박승흥 6조 3항입니다. 자료 34페이지 현행법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6조 3항이 박근혜 의원안은 32페이지지요? 박근혜 의원안은 이대로 가면 문제가 돼요?

○국방부군공항이전사업단장 박승흥 의무조항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지금 논쟁이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국방부군공항이전사업단장 박승흥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예요?

○국방부군공항이전사업단장 박승흥 예, 그 부분하고……

○소위원장 부승찬 대구는 어때요?

○국방부군공항이전사업단장 박승흥 물론 지금 현재 의무조항이 아닌 재량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니까 강대식 간사가 생각을 잘못했다, 맨날 후회하는 게 이거거든요. 결국은 못 가고 있잖아요, 광주도. 민간·군 복합 공항으로 가는 데도 사실은 사업

추진이 정말 어렵게 돼 가고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숙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 물론 국방부만 하는 건 아니지만 재정부랑 논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기부 대 양여 원칙을 깰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은 여기는 ‘할 수 있다’인데 저는 답변이 ‘지원 못 해’로 들려요.

○국방부군공항이전사업단장 박승홍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10년이라는 갭이, 지금 현재 판단한 시점에서 사업비와 10년 뒤에는 다시 한번 정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산하는 시점에 사업비가 적게 들 수도 있지만 보통 사업을 1년 단위로 하게 되면 한 3.5%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물가상승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 걸 고려해서 사업비를 최초 판단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초과사업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에 미리 지금 광주공항도 그렇고 대구공항도 이 조항을 의무조항으로, 혹시라도 사업비 초과분이 100이 발생을 했을 때 국가에서 100을 다 지원해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드시 의무조항으로 넣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제일로 우려되는 부분이, 국가가 초과사업비를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그 신념은 변함이 없지만 지자체가,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 속에 최대한 사업비를 절감하고 효율화하는 방안을 통해서 국가재정이든 지방재정이든 최소한으로, 적게 들게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법 규정에 의무조항이 아닌 재량적 조항 수준으로 타협을 했던 겁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아니, 그 말씀 중에는…… 그러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정부가 몇 퍼센트를 부담한다든지 그다음에 중앙정부가 몇 퍼센트를 부담한다고 그러면 도덕적 해이는 생길 수가 없잖아요, 초과분에 대해서만 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100% 사업비가 나오면 지방정부가 초과 사업으로 해서 다 국가에다가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 도덕적 해이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면 지방정부하고 중앙정부가 매칭으로 가 버리면 되잖아요, 초과 사업. 이런 건 안 돼요? 그 안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해서,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는 거는 도덕적 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정부가 물어줄 텐데, 보조를 해 주는데 나야 그냥 대충 그래서 부풀려도 금액이 올라가도 결국은 중앙정부가 할 텐데, 이것보다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동시에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은 없냐 이거지요. 이 방안에 대한 검토는 해 보셨어요?

○국방부군공항이전사업단장 박승홍 매칭펀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해 보지는 않았는데……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니까 그런 방안까지 고려를 해서 이 사업이, 대구 사례를 봤을 때 결국은 못 가고 있잖아요. 간다 간다 하면서 내일 갈 것처럼 하는데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 사업자가 쉽게 들어올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뭔가 보장을 해 주고 보증을 해 주고 보조를 해 줘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덜컥 받았다가 손해를…… 기업 입장에서든, 사업자 입장에서든 손해만 볼 순 없잖아요. 일정 부분 이익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관점에서, 도덕적 해이의 우려 때문이라면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좀 더 많은 방안들을 테이블에 올려 놓고 대구공항과 군 공항이 차질 없이 이전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오히려 위원장이 말이 길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 달라.

그래서 박군택 의원이나 서삼석 의원이 이 법을 발의했기 때문에—여기서는 통과를 못시키지만—다음에 심의안으로 올라올 때는 일정 부분 정부와 그다음에 법안 발의하신 의원 간에 서로 의견 조율을 해서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잘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이거 계속 논의해 봐야 필요가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거 아니에요, 국가 보조. 그렇지요? 이거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임종득 위원 예.

○소위원장 부승찬 관계없지요, 넘어가도?

백선희 위원님, 뭔가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방금 심사한 안건을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및 43항, 2건의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4항 군사훈련영향지역 주민 보호 및 사고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소위자료 124쪽 44번입니다.

김용태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제정법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군사훈련 주변지역에서의 사고 발생에 대한 대응·복구 및 사고 피해자의 생활안정, 피해지역의 민·군 상생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해서 군사훈련영향지역을 지정하고 영향지역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긴급생활지원금 지급하고 주거대책 마련하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25쪽 총괄 검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 발의 계기는 2025년 3월 포천에서 군사훈련 중인 공군 전투기의 오폭 사고로 인한 심각한 민간 피해입니다. 이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신속 대응 및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다만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할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발생했던 그 사고와 관련해서 주민분들의 안타까움이나 군의 죄송스러운 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하지만 개별 법안 항목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위원님들 의견……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제가 물어볼 게 있어요. 지난번 오폭 사고 이후에 필요성은 다 공감을

할 겁니다. 그래서 특별법으로 만드는 것 같은데, 이게 기본법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기본법으로 만들려면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그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이게 이루어졌습니까? 제가 못 본 걸 같아 가지고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아직 이 부분은 저희가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만약에 공청회가 있다 그러면 국방위원들이나 저 같은 경우도 참여해서 들어보고 의견도 제시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절차들을 제대로 밟아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차관님 생각은 어때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백선희 위원님.

○백선희 위원 제가 오폭 현장에 두 번 갔었습니다. 가서 특히 주민들 지원도 하고 했는데요. 저는 이런 군사훈련지역의 주민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고는 동의를 하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방부에서도 그 필요성은 공감할 하는 것 같으나 여러 가지 구체적인 법안에 대해서는 신중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임종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국방위원들이 관심 있으실 텐데 조금 구체적으로 같이 공감하는 그런 자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회나 공청회나 그런 자리가 열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지금 포천 오폭과 관련해서는 배·보상이 이루어졌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 법적 근거는 뭐예요? 국가배상법이에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소위원장 부승찬 별도의 특별법을 발의하면 추가적인 배상을 하라는 거예요, 취지가?

○국방부차관 이두희 취지가 군사지역에 여러 많은 불편함도 있고 또 그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피해자의 생활안정이나 민·군 상생발전 이런 부분들을 더 확대해서 하라는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면 이것을 하면 이전에 배·보상했던 부분들을 환수하나요? 그리고 이 법에 맞춰서 가는 건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통상 소급 적용은 잘 하지는……

○소위원장 부승찬 않습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면 이 법이 통과되었을 때 포천시민들한테 추가적으로 가는 것은 뭐예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당장 그분들을 위하기보다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소위원장 부승찬 미래에 대한……

○국방부차관 이두희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발생했을 때 피해 입은 주민분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보상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도 상생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취지는 공감하고요. 하여튼……

○유용원 위원 첨언해서, 포천 사고 관련해서 배상이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배상받은 피해 주민들이 소송을 하거나 어떤 이의제기를 하거나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지역 확대 관련해서 인접 면, 인접 마을에서 추가적으로 나름 정부에서 재난지역으로 평가해서 했는데 확대를 요구하는 그런 민원들은 있었습니다.

○유용원 위원 개별적으로 배상액수가 적다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민원을 제기하거나 그런 경우는……

○국방부차관 이두희 개별 소송은 제가 못 들은 것 같은데……

○국방부정책기획관 우경석 정책기획관입니다.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주민안전지원금을 노곡2리 227세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723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만족을 하지만 일부 다른 지역에서도 피해를 봤다라는 입장을 표현하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더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저 한 가지만 할게요.

○소위원장 부승찬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이게 지금 기존의 법안에 따라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맞는데 왜 특별법을 만들려고 하는가 하면, 지금 군사훈련장이 있는 지역이 꽤 많이 있어요. 공지합동 훈련 하는 데, 제병협동훈련 하는 데가 있는데 지역이 많고 거기 주민들의 피해가 현실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훈련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집회도 하고 데모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사고도 나고 했으니까 차제에 훈련장과 관련돼 가지고 피해가 났을 때만 보상해 주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역 발전, 지자체 발전이나 지역주민들의 복지나 이런 것까지를 다 엮어 가지고 특별법으로 만들어 줌으로써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의 반대를 좀 완화하려고 하는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가는 것은 저는 찬성을 합니다. 다만 절차적인 부분을 신경 써 달라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감사합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한 안전을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군사훈련영향지역 주민 보호 및 사고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성환 전문위원입니다.

소위자료 3권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군부대 통폐합·재배치에 따라 군부대 부지로 활용되지 아니한 토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미활용 군용지라 하는데요, 현재는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라 강원도지사에게만 현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강원도 외의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시·도지사에

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관리·처분에 대한 의견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미활용 군용지 현황표에서 보듯이 미활용 군용지는 강원도뿐만 아니라 경기북부 등 전국적으로 다수 발생하고 있어서 강원도 외에도 이런 현황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군사 보안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방정부에 미활용 군용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백선희 위원 동의합니다. 이것은 작은 부분이기는 한데, 제목이 7조의2는 미활용 군요지 현황 제공인데 정확히는 현황 정보 제공이지요. 그렇지요? 위에 보면 국방부 입장에 현황 정보 제공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현황 정보 제공이라고 명확히 할 필요는 없는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현황 정보 맞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기타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심사한 안전을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6항부터 제48항까지 3건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성환 5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46항, 47항은 유사 내용을 담고 있어서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제한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 이남 25km 범위 이내에서 설정하고 있고 민통선은 군사분계선 이남 10km 범위 이내에서 설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제한보호구역 지정 범위를 25km에서 10km로 축소하는 안이고요. 그리고 민통선 지정 범위를 현행 10km 이내에서 5km 이내로 축소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권이 확대되는 상황이고 현행 벨트형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작전 개념 변화에 따라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국방부가 지난 1월에 발표한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국방부 역시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벨트형을 박스형으로 조정하고 민통선을 북상시킬 계획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접경지역과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분들의 생활 불편과 또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잘 지원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부분도 필요성을 적극 공감하고, 대통령 주관 두 차례의 공청회 이후에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획기적으로 축소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것을 수치적으로 일괄적으로 거리로 줄이는 부분은 다소 제한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스형이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도 충분히 대체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두 분의 제안에 적극 동의를 하고, 이제는 좀 바뀔 때가 됐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전향적으로 축소시켜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국방부 검토의견에도 이야기되었듯이 5km 이내로 하더라도 사실 군사작전상 융통성을 부여하지 않으면 국방부나 군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위당을 조금 고쳐 가지고 이 부분에 융통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유용원 위원님.

○유용원 위원 저도 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지금 일괄적으로 한기호 의원님은 5km까지 축소하고 김병주 의원님은 10km까지 축소하는데, 실질적으로는 5km 이하도 있고, 그렇지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소위원장 부승찬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10km, 7km 돼 있어요. 그렇지요? 이것을 일률적으로 했을 때는 작전상에 문제가 있지요? 이런 부분들 검토가 완벽히 됐습니까?

○국방부차관 이두희 지금 얼추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과거와 다르게 파격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서 많이 완화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치적으로 제한하는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면 어찌 됐든 정부에서 검토를 해서 갖고 재산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획기적으로, 임종득 위원님이 경계작전 개념 자체부터 시작해서 계속 강조했던 거기 때문에, 이게 또 민통선하고 이어지잖아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소위원장 부승찬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최소화를 할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그리고 한기호 위원님께서도 수차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답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알겠습니다.

47항에 대해서는 다 하신 건가요?

○전문위원 문성환 48항 남아 있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48항.

○전문위원 문성환 48항, 유용원 의원 대표발의 법안입니다.

10페이지고요.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 등의 토지 취득 시 원칙적으로 신고를 하고 예외적으로 군사보호구역 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개정안은 외국인 등이 통제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의 토지를 취득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유증 등의 사유로 토지 취득 시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난 소위 때는 관련해서 국방부가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제시됐고요.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제한함으로써 군사기밀 유출 가능성을 방지하고 국가 안보 위협 요소를 제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외국인의 대우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배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상속·유증 등의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해야 되는데 국방부가 이러한 부동산 거래를 파악하고 검증할 시스템이 준비돼 있는지 이러한 요소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유용원 의원안으로 관련된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같이 제출한 상태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국방부 입장에서든 오히려 필요성을 더 인식하고 적극 추진해야 되고 또 취지도 공감은 하지만 시행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산 미군 비행장이나 스텔스기가 있는 비행장 주변에서 촬영하고 또 부산 해작사 주변에서 잠수함이나 함정의 모습을 촬영하는 이런 부분들이 식별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군사시설 보호구역 밖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울타리 주변으로 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할지를, 현재 협의체에서 운용되고 있는 것의 심사를 강화하는 측면과 좀 더 기술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임종득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임종득 위원 정부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정보 그다음에 검증 시스템 자체가 지금 작동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측면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법안의 개정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 차원에서 이것을 다 검토하기가 기간적으로도, 역량적으로도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유용원 의원이 이렇게 발의했으면 국방부는 이 부분들을 해당 부처하고 협의를 하면서 기존에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신고하는 시스템이나 검증하는 시스템이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갖추기 위해서 얼마만한 추가적인 인력이 라든가 예산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검토의견을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난 다음

에 해 줘야 이게 나가지, 취지는 분명히 좋은데 국방부 입장에서 ‘이게 우리 일이 아니니까 신중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끝나면 발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관련 부처하고 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유용원 위원님.

○유용원 위원 저도 발의한 사람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정부의 애로사항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파악한 바로는 군사보호구역 내 외국인 토지 취득을 위한 협의 요청건이 2023년에 60건이었는데 2024년에 229건으로 늘었고 작년 7월까지 통계가 파악된 게 있는데 118건이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방부도 취지에는 동의를 하셨지만, 입법은 상당히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

또 하나, 국토부 등에서 형평성·상호주의 얘기를 하는데 외국에도 이런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2021년 6월에 중요시설 주변 및 국경나도 토지 등의 이용상황 조사 및 이용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군사시설 주변 및 국경지역의 외국인 토지 소유를 금지 또는 규제하고 있고, 그 외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미국이라든지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등도 외국인 토지 소유를 군사적으로 민감한 구역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외국 사례들을 감안할 때 우리도 충분히 입법화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래서 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방부가 좀 더, 이것은 국토부의 일이고 이런 식으로만 대응하실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예, 알겠습니다.

국토부는 재외국민의 재산권 행사가 지장을 받을까 봐 형평성·비례성 원칙을 논하고 있지만 저희 국방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다급하게 필요한 시점이고 실제로 의심되는 정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유관부처와 협조도 하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좀 더 해 나가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백선희 위원님.

○백선희 위원 유용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의 그 배경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안보의 문제이고 또 이 부분이 소요라고 하는 문제는 필요시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의 제한의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법안이 통과는 안 되지만 국토부와의 정보 교류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군사기지 주변에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 땅 이런 것……

예, 국장님.

○국방부군사시설국장 천승현 군사시설국장 천승현입니다.

지금 부동산 거래신고법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섬 지역, 군부대 주둔지, 국가 중요시설에 대해서 국정원과 방첩사 이런 협조체계가 있는데 미진한 점이 있어서 강화된 심사체계를 저희가 협의하겠다고 지난 연말에도 1차 소위 할 때 보고를 드렸고요. 그보다 더 강한 수단으로써 특정 군부대 주변은 아예 토지거래 허가를 금지하는 조문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논의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다만 국토부는 여전히 외국인에 대한 상호주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그

부분, 우리가 전면 금지하는 게 아니라 일부분, 특정 목표에 취합하는 것을 하겠다라고 조금 설득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서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용원 위원** 첨언해서, 지금 우리가 사실은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힘들지만 주 우려 대상이 되는 나라가 중국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임종득 위원** 허가 아니에요?

○**유용원 위원** 중국에 국한해서 본다면 상호주의를 적용한다는 게, 그러면 오히려 우리는 더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국방부차관 이두희** 이것은 국방부가 소극적이다,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필요한데 정부 부처와의 협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 의도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냥 단순히 법 생각이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국토부랑 협의를 통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제한구역 내의 건물주들이나 이런 사람들, 예를 들어서 여러 국적을 가진 외국인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유심히 뭔가 조치를 취하는, 감시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용원 의원님하고—법 개정안을 발의하셨으니—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있지만 특정 군사시설, 보호해야 할 가치가 높은 시설과 그 주변은 외국인에 대해서 토지거래를 허용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한번 정부 측과 유용원 의원실이 협의를 해서 안을 만들어서 올리면…… 어쩔 수 없는, 이게 만들어져야 될 법이라는 생각들은 다 하잖아요, 취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해서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정보 당국과도 긴밀히 협의해서, 같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협의해서 그런 방안이 만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한 안건을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부터 제48항까지 3건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의결정족수가, 위원이 모자랄 것 같아서 위태위태합니다.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성환** 소위 자료 16페이지입니다.

현행은 평시에 일정기간 소집할 수 있는 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에 요약돼 있고요. 개정안은 ‘비상근 예비군’ 명칭을 ‘상비예비군’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상비예비군이라는 용어를 사용 중에 있고 자긍심 고취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하나 수정의견 제시한 것은, 최근에 공포 후 시행 전 법률 2

건이 있습니다. 병역법하고 예비군법이 있는데요, 여기도 비상근 예비군 용어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정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두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종득 위원님, 하실 말씀 없어요?

○임종득 위원 위원장님이 제출한 건데 제가 뭘 토를 달겠습니까? 그냥 넘어가시지요.

○소위원장 부승찬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한 안건을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법률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관계관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

○출석 위원(6인)

박선원 백선희 부승찬 유용원 임종득 한기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전문위원 문성환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방부

차관 이두희

기획관리관 오성식

국방개혁기획관 차원준

정책기획관 우경석

인사기획관 이인구

예비전력정책관직무대리 김기영

보건복지관 성기욱

군사시설국장 천승현

군공항이전사업단장 박승홍

국방인공지능기획국장 전준범

전력정책국장직무대리 이성은

군수관리국장 이갑수

법무관리관직무대리 이정민

군인권개선추진단장직무대리 김미성

6·25비정규군보상지원단

단장 신재연

주한미군이전사업단

단장직무대리 김주열

병무청

차장 김용무

병역자원국장 정재숙

입영동원국장 최정효

사회복무국장 서승일

방위사업청

차장 김일동

기획조정관 한경수

방위산업진흥국장직무대리 최은신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 윤창문